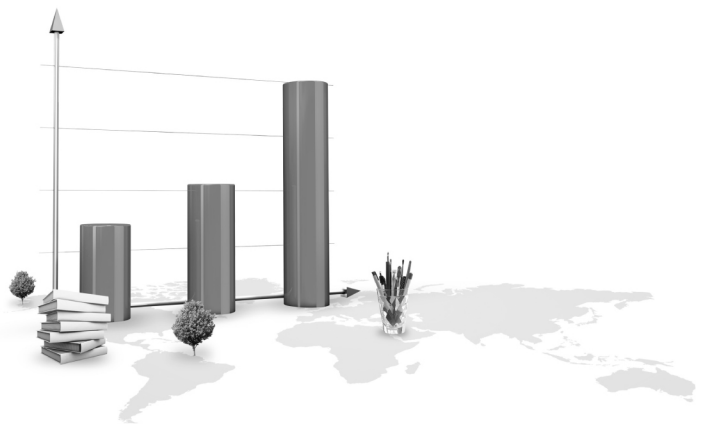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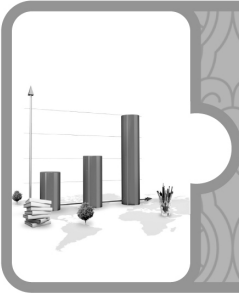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일 시 | 2012. 9. 5(수) 14:00~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최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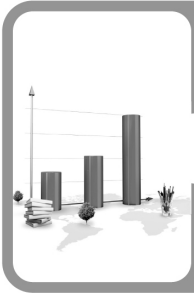
❖ **일 시** | 2012. 9. 5(수) 14: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일정

사회 : 김지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00 ~ 14:20	등록		
14:20 ~ 14:40	개회사 및 축사		
14:40 ~ 15:40	제1주제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홍영오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탁종연 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나영민 경정(경찰청 수사제도담당)
15:40 ~ 16:00	휴식		
16:00 ~ 17:00	제2주제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박형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지태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정인 경정(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
17:00 ~ 18:00	제3주제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	발표 강지현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성훈 교수(경찰대학 행정학과) 최준영 경정(경찰청 KICS운영담당)



차례

개회사	1
제1주제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홍영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제2주제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45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제3주제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사례	77
강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죄분석」, 「사법연감」에 대한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등 범죄통계의 기반확충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며,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표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2011년에 MOU를 체결한 이후 우선적으로 범죄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고, 올해에는 「2011년 범죄통계」의 공동발간과 공동학술세미나의 개최라는 협력의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는 치안 및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인 공식범죄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실제 공식범죄통계의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 사례를 통해 공식범죄통계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진 각국의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우리의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촉진되어 우리의 범죄통계가 더욱 정확해지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것은 과학적인 치안정책 및 증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형사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범죄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은 그동안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범죄통계를 생산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경찰청 실무진의 열정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학술 세미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의 상호협력의 중요한 결실이자 본격적인 첫 발걸음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고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학계와 실무계의 여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질적인 발전과 성숙을 위한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2년 9월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 일 수

제 1 주제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홍영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1. 서론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표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또한 한 사회의 안전성 및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회지표 중의 하나이며(탁종연, 2008),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가 이와 같이 치안정책과 형사정책 수립 및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식 범죄통계자료는 학문적으로도 범죄학의 이론 검증이나 우리 사회 특유의 이론 정립을 비롯하여 한 사회의 범죄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새로운 범죄통계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가 이와 같은 범죄 관련 연구를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식 범죄통계의 원자료가 학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매년 빈도표 중심의 집계통계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한두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또는 기껏해야 연도별 추세분석이나 가능하였을 뿐 범죄사건, 범죄자, 피해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었다. 한 해 200만건 가까이 되는 정보가 범죄통계 책자만 발간하고는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¹⁾은 연방수사국(FBI)에서 전국의 17,000여개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범죄관련 자료인 UCR(Uniform Crime Report) 및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을 포함하여, 범죄, 범죄자, 범죄피해자 및 사법시스템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형사사법자료보관소(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 NACJD)²⁾는 전산화된 범죄관련 데이터를 보관하고 이를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공유하도록 공개하여 형사사법 및 범죄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심지어 양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자료를 이용한 학술대회³⁾와 워크숍⁴⁾도

1) <http://bjs.ojp.usdoj.gov/index.cfm?ty=abu> 참조

2) <http://www.icpsr.umich.edu/icpsrweb/content/NACJD/mission.html> 참조

3) BJS는 비영리단체인 JRSA(Justice Research & Statistics Association)와 매년 사법정책과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와 연구를 활용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되었고 (<http://www.jrsa.org/events/conference/conf10/agenda.htm>), 금년에는 10월에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취소되었다. <http://www.jrsa.org/index.html> 참조.

4) BJS는 지난 24년 동안 '범죄 및 형사사법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한 4주간의 집중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BJS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해 개관해주고 개인의 연구프로젝트에 이 자료들을 활용할 수

개최하고 있다.

범죄통계 자료의 활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의 정확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공식 범죄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김은경·박정선·정병하·탁종연·황정인, 2009; 탁종연·전영살·이희갈·심수진, 2008; 황지태, 2011). 범죄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살인사건의 통계의 정확성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사건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대부분 인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통계를 분석해보면 이 통계마저 정확하지 않다⁵⁾. 즉 통계를 입력하는 수사관들이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담당자들은 범죄사건에 대해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등 세 가지 통계원표에 입력해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통계업무는 직접적인 수사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수사관들도 원표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작성을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09). 또한 범죄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발생과 검거가 모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09). 즉 범죄 발생의 증가와 검거율의 하락의 책임을 모두 경찰에게만 돌리는 언론⁶⁾과 정치인의 질타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공식 범죄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Loftin과 McDowall(2010)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자들은 UCR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이중적인(양면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편으로는 UCR 데이터가 타당하지 않고 범죄행동의 지표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⁷⁾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주요 범죄유형의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는 UCR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구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Blua와 Blau(1982)는 UCR이 몇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CR은 심각한 범죄의 절대적 빈도가 아니라 상대적 빈도의 지표로는 타당하다는데 많은 범죄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하였다.

있도록 지원한다. <http://www.icpsr.umich.edu/icpsrweb/content/NACJD/bjssp.html> 참조.

- 5) 이에 대해서는 황지태(2011)의 ‘범죄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방법론’ 참조.
- 6) 미국에서도 범죄통계 특히 지역별 범죄통계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많은데, 언론보도가 지역의 범죄를 경찰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는 경찰력 이외에 지역의 경제력, 복지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7) UCR 사용에 대한 비판, 1) 정의가 사법기관별로 일관적이지 않다 2) 많은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며 신고가능성도 체계적으로 다양하다 3) 경찰이 범죄를 보고하는데 있어 선택적이고 이 선택 과정이 사회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일관되어 있지 않고 편향되어 있다 4) 결측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5) 범죄자의 특성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거자료에서 추론해야만 한다 6) UCR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프로 그래프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반영하는 자료일 뿐이다(Loftin & McDowall, 2010).

공식 범죄통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학자들 역시 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은 꾸준히 공식 범죄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공식 범죄통계가 범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있을 것이다.

범죄통계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있다. 신뢰도란 동일한 현상을 반복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한가의 문제로서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집계되고 작성절차가 변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범죄통계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여러번 반복해도 동일하게 분류되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수사관들간의 신뢰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류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공식 범죄통계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암수범죄의 문제 즉 한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가 신고되지 않거나 사회 또는 경찰이 그런 사건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계되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가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로서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Skogan, 1974).

이 외에 범죄통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UN 경제 및 사회문제 담당부서의 통계분과(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매뉴얼에 따르면, 통계자료는 1) 범죄 발생 - 심각성, 발생률, 추세, 상황 등, 2) 범죄자 특성, 3) 형사사법시스템의 적정성 또는 업무량(범죄, 체포, 교정, 보호관찰 등), 4) 형사사법단계 별 범죄자 및 사건수 5) 재범률, 6) 피해자의 특성, 7) 비용, 8) 범죄와 관련있는 변인(경제상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9)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자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가? 경찰 및 검찰의 범죄통계에서는 범죄 발생,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모든 범죄에 대해 같은 내용의 통계를 수집한다든지, 시대에 뒤떨어진 수집 항목이라든지, 피해자 정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김은경 외, 2009).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의 신뢰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찰청과 「2011년 범죄분석」의 공동발간을 위한 원자료 분석 경험⁸⁾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 특히 경찰의 범죄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범죄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경찰에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은 2011년 MOU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의 하나로써 '범죄통계분석활용추진팀'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경찰의 「2011년 범죄분석」을 8월 31일 공동발간하였음

서 집계한 범죄통계는 범죄발생에서 범죄자의 출소에 이르기까지의 범죄 및 형사사법절차 중 가장 첫 단계의 통계이므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첫 단계의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어야 이후단계의 통계도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1년에 연구보고서를 출간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권세역·탁종연, 2007; 김은경, 2008; 김은경 외, 2009; 박정선, 2008; 탁종연 2006, 2007; 탁종연 외, 2008), 이 글에서는 이들 의견에다 원자료를 실제로 분석하면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II.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인력풀 중 범죄학과 경찰행정학 및 형법과 형사법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응한 총 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범죄학, 범죄사회학, 경찰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는 34명, 형법 및 형사법 전공자는 36명이었다. 조사는 2012년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최근 3년간 범죄통계 이용경험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82.9%, 경찰청의 ‘범죄통계’ 72.9%, 법원의 ‘사법연감’ 50%,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32.9%, 법무부의 ‘교정통계’ 28.6%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한 목적은 ‘범죄실태 분석 연구’가 85.7%로 가장 높고, ‘치안 및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52.9%이며,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 연구’ 32.9%, ‘시민들의 치안수요와 삶의 질 연구’ 8.6%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전공 교수는 ‘시민들의 치안수요와 삶의 질 연구’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식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9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범죄통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나. 조사내용

조사는 크게 공식 범죄통계자료 이용 경험 및 인식과 공식 범죄통계자료 신뢰성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식 범죄통계자료 이용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범죄통계자료 이

용경험 및 목적, 중요성, 신뢰성,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공식 범죄통계 자료 신뢰성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공식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 내용의 적정성, 공개방안, 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에 대한 인식도, 현실화 정책 추진 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다. 조사결과

1) 범죄통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중요성 인식 정도 평가

먼저 전반적으로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은 공식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법원(3.6점)을 제외하고는 약간 중요하게 인식하는 수준에 가까운 3.9점이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 범죄통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중요성 인식 정도 평가

단위: %, 점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경찰	68	-	13.2	16.2	42.6	27.9	3.9
검찰	68	1.5	8.8	22.1	38.2	29.4	3.9
법원	68	2.9	16.2	23.5	35.3	22.1	3.6
법무부	68	2.9	7.4	22.1	36.8	30.9	3.9

* F(3,201)= 7.255, p<.000

2) 형사사법기관 범죄통계 신뢰성 인식도

각 형사사법기관의 공식범죄통계의 신뢰성을 알아본 결과, 경찰통계 대한 신뢰성은 5점 만점에 3.5점, 나머지 검찰통계, 법원통계, 법무부통계는 모두 3.7점으로 경찰통계에 대한 신뢰성 인식도가 다소 낮았으며,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 형사사법기관 범죄통계 신뢰성 인식도

단위: %, 점

	사례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신뢰 한다	매우 신뢰 한다	평균
경찰	68	1.5	11.8	35.3	42.6	8.8	3.5
검찰	68	1.5	8.8	26.5	47.1	16.2	3.7
법원	68	1.5	10.3	23.5	44.1	20.6	3.7
법무부	68	1.5	8.8	27.9	47.1	14.7	3.7

* F(3,201)= 8.020, p<.000

3) 경찰 통계 책자에 대한 인식

“경찰통계책자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2.9%, ‘약간 그렇다’가 39.7%로 42.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2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깝다. 전공별 차이는 없었다.

<표 3> 경찰통계책자의 내용 만족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8	4.4	13.2	39.7	39.7	2.9	3.2
전공	사회과학	33	9.1	12.1	36.4	39.4	3.0	3.2
	법 학	35	0.0	14.3	42.9	40.0	2.9	3.3

“경찰통계책자의 각종 범죄의 인지 및 검거 상황 등 추이 자료를 신뢰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7.4%, ‘약간 그렇다’가 38.2%로 45.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4점으로 보통 수준 보다 높다. 이 역시 전공별 차이는 없었다.

<표 4> 경찰통계책자의 각종 범죄의 인지 및 검거 상황 등 추이 자료 신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8	2.9	10.3	41.2	38.2	7.4	3.4
전공	사회과학	33	6.1	12.1	30.3	45.5	6.1	3.3
	법 학	35	0.0	8.6	51.4	31.4	8.6	3.4

“경찰통계책자의 죄명분류방식 및 제시방식에 만족한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2.9%, ‘약간 그렇다’가 20.6%로 23.5%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1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전공별 차이는 없었다.

<표 5> 경찰통계책자의 죄명분류방식 및 제시방식의 만족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8	1.5	11.8	63.2	20.6	2.9	3.1
전공	사회과학	33	3.0	9.1	66.7	15.2	6.1	3.1
	법 학	35	0.0	14.3	60.0	25.7	0.0	3.1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경찰의 범죄통계 책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이

었다.

3) 공식 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범죄사건 수가 정확하게 입력된다”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우 그렇다’ 1.5%, ‘약간 그렇다’ 21.2%로 22.7%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9점이었다. 전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범죄통계원표 작성기준에 의하면 범죄건수는 피의자의 행위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일기회를 이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전후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업으로서 또는 직업적으로 반복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포괄 1건), 동일한 취지, 명목하에 동일한 수단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포괄 1건), 1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중 중한 죄 또는 주된 죄 1건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성과가 중요하여 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1건으로 해야 할 범죄사건을 행위별로 사건을 잡는 경우도 있다.

<표 6> 범죄사건 수 입력의 정확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체		66	4.5	25.8	47.0	21.2	1.5	2.9
전공	사회과학	33	6.1	27.3	48.5	18.2	0.0	2.8
	법학	33	3.0	24.2	45.5	24.2	3.0	3.0

“범죄사건 수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하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0%, ‘약간 그렇다’ 19.7%로 22.7%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8점이다. 전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기준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행위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건의 행위를 1건으로 처리하는 예외를 정함에 있어 현행 지침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일관된 원칙이 없어서,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특정한 범죄들은 체계적으로 왜곡 축소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김은경 외, 2009). 현장에서는 사례에 따라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실적 등에 의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 사실 죄수론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해석 분야임에는 틀림없지만 죄수론에 입각한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단순히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은경 외, 2009).

<표 7> 범죄사건 수 입력기준의 명확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3.0	34.8	39.4	19.7	3.0	2.8
전공	사회과학	33	3.0	42.4	33.3	18.2	3.0	2.8
	법 학	33	3.0	27.3	45.5	21.2	3.0	2.9

“범죄통계 전문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한명도 없었고, ‘약간 그렇다’ 9.1%로 9.1%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4점이다. 전공별로는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더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범죄통계 담당자의 인력도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죄통계 전문요원은 거의 배치되어있지 않았다.

<표 8> 범죄통계 전문요원의 배치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12.1	48.5	30.3	9.1	-	2.4
전공	사회과학	33	18.2	54.5	24.2	3.0	-	2.1
	법 학	33	6.1	42.4	36.4	15.2	-	2.6

* t(64)=-2.510, p<.05

“범죄통계 전문요원이 통계품질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0%, ‘약간 그렇다’ 12.1%로 12.1%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5점이다. 이 역시 전공별로는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더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기본적으로 경찰 범죄통계의 경우 범죄통계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통계 담당자가 통계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한두명이 이를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

<표 9> 범죄통계 전문요원의 통계품질 관리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9.1	40.9	37.9	12.1	-	2.5
전공	사회과학	33	12.1	54.5	27.3	6.1	-	2.3
	법 학	33	6.1	27.3	48.5	18.2	-	2.8

* t(64)=-2.645, p<.05

“입력하는 수사관에게 범죄통계 교육을 잘 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한명도 없었고, ‘약간 그렇다’에 10.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평균 2.5점으로 상당히 낮았다. 이 역시 전공별로는 사회과학 전공자들 더 부정적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수사관에 대한 범죄통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년 4월 경찰청 수사과에서 처음으로 범죄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범죄통계개요, 범죄통계원표 작성방법, 범죄통계승승인 및 산출방법, 주요 오류 입력항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경찰청 수사국, 2012), 이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10> 수사관에 대한 범죄통계 교육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9.1	43.9	36.4	10.6	-	2.5
전공	사회과학	33	15.2	51.5	27.3	6.1	-	2.2
	법 학	33	3.0	36.4	45.5	15.2	-	2.7

* t(64)=-2536, p<.05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에 따라 범죄 수사업무 담당 경찰이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5%, ‘약간 그렇다’ 18.2%로 22.7%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0점으로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57호)에 의하면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표 11> 범죄 수사업무 담당 경찰의 범죄통계원표 작성여부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1.5	27.3	48.5	18.2	4.5	3.0
전공	사회과학	33	0.0	24.2	51.5	15.2	9.1	3.1
	법 학	33	3.0	30.3	45.5	21.2	0.0	2.8

“범죄통계원표 작성기준이 구체적이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한명도 없었고, ‘약간 그렇다’ 16.7%로 16.7%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7점이다.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예규 제348호)’ 및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57호)’과 ‘경찰범죄통계실무지침’에 따라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원하고 있다.

<표 12> 범죄통계원표 작성기준의 구체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3.0	37.9	42.4	16.7	-	2.7
전공	사회과학	33	3.0	39.4	45.5	12.1	-	2.7
	법 학	33	3.0	36.4	39.4	21.2	-	2.8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매뉴얼이 제공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한명도 없었고, ‘약간 그렇다’ 18.2%로 18.2%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8점으로 상당히 낮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검찰청예규와 경찰청훈령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작성기준이 있으나(경찰청 수사국, 2012),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이 기준만으로 작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다.

<표 13> 범죄통계원표 작성 매뉴얼 제공여부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4.5	25.8	51.5	18.2	-	2.8
전공	사회과학	33	6.1	24.2	51.5	18.2	-	2.8
	법 학	33	3.0	27.3	51.5	18.2	-	2.8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에 있어 성과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5%, ‘약간 그렇다’ 12.1%로 13.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2.7점으로 낮았다.

실제로는 성과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이 누락되기 보다는 범죄사건 수 산정에 있어 1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이를 여러 건으로 처리하여 실적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실적이 강조되어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특정 해의 통계왜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게 되

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4> 성과지표의식 통계원표 누락이나 왜곡금지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6	6.1	37.9	42.4	12.1	1.5	2.7
전공	사회과학	33	6.1	48.5	27.3	15.2	3.0	2.6
	법 학	33	6.1	27.3	57.6	9.1	0.0	2.7

4) 경찰 범죄통계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경찰 범죄통계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알아보았다. 다만 질문은 현재의 내용에 비해 수정필요성을 중심으로 동의여부를 알아보았다.

“범죄통계의 분석단위가 현재보다 더 다양화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9.1%, ‘약간 그렇다’ 43.8%로 82.9%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2점이다. 현재는 어떤 피의자들이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검거되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르 좀 더 다양화하여 분석단위를 수준별로는 개인 뿐 아니라 집단, 지역, 주체별로는 가해자, 피해자, 피해품, 위반행위 및 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탁종연 외, 2008).

<표 15> 범죄통계의 분석단위의 다양성 확대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15.6	43.8	39.1	4.2
전공	사회과학	32	3.1	12.5	46.9	37.5	4.2
	법학	32	0.0	18.8	40.6	40.6	4.2

“어떤 집단이나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3.8%, ‘약간 그렇다’ 42.2%로 86.0%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3점이다. 현재는 각 지방의 경찰청별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지역별로는 50여개의 도시와 기타도시 그리고 도시이외로만 자료가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발생지를 좀 더 구체화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 시단위, 군단위 등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은경 외, 2009).

<표 16> 집단이나 지역 관련 범죄발생 내용의 구체성 확대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12.5	42.2	43.8	4.3
전공	사회과학	32	3.1	9.4	40.6	46.9	4.3
	법학	32	0.0	15.6	43.8	40.6	4.3

“어떤 피해자나 피해품이 주로 목표물이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4.4%, ‘약간 그렇다’ 42.2%로 76.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1 점이다. 현재는 피해결과관련 통계는 재산피해정도, 재산회수정도, 재산피해 및 회수정도, 신체피해 상황, 신체피해(상해) 정도만이 제공되고 있다. 피해자의 특성관련 통계는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만이 제시되고 있다. 즉 최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중요해지고 무엇보다 범죄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너무 부실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내용과 피해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통계가 보다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7> 주된 피해자나 피해품에 대한 내용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4.7	18.8	42.2	34.4	4.1
전공	사회과학	32	0.0	15.6	40.6	43.8	4.3
	법학	32	9.4	21.9	43.8	25.0	3.8

“모든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원표가 작성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1.9%, ‘약간 그렇다’ 42.2%로 64.1%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8점이다. 현재도 지침상 피의자원표는 피의자 수대로 작성하게 되어있다.

<표 18> 모든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원표 작성 필요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6.3	28.1	42.2	21.9	3.8
전공	사회과학	32	3.1	3.1	15.6	43.8	34.4	4.0
	법학	32	0.0	9.4	40.6	40.6	9.4	3.5

“여러 개의 범행, 피해품, 피해자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6.6%, ‘약간 그렇다’ 42.2%로 69.4%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9점이다. 현재의 범죄통계원표 작성기준에 따르면, 1인 수죄의 경우에는 발생원표와 검거원표는 각 죄마다 (수매) 작성하고 피의자원표는 그 중 가장 중한 죄 또는 주된 죄에 대해서만 1매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고 있다.

<표 19> 여러 개의 범행, 피해품, 피해자 입력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3.1	28.1	42.2	26.6	3.9
전공	사회과학	32	3.1	18.8	34.4	43.8	4.2
	법학	32	3.1	37.5	50.0	9.4	3.7

“범죄통계의 현황 뿐만 아니라 통계에 대한 기본적 설명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0.0%, ‘약간 그렇다’ 35.9%로 85.9%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4점이다. 범죄통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통계에 대한 기본 설명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0> 범죄통계의 현황 및 통계에 대한 기본적 설명 정보 제공 필요성

		사례수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4.1	35.9	50.0	4.4
전공	사회과학	32	9.4	31.3	59.4	4.5
	법학	32	18.8	40.6	40.6	4.2

“범죄통계 수집방법, 오류통제 방식 등 배경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1.6%, ‘약간 그렇다’ 35.9%로 87.5%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4점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범죄통계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죄통계 수집방법이나 오류통제방식 등 배경설명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1> 범죄통계 수집방법, 오류통제 방식 등 배경설명의 제공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10.9	35.9	51.6	4.4
전공	사회과학	32	0.0	6.3	37.5	56.3	4.5
	법학	32	3.1	15.6	34.4	46.9	4.3

“죄명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세부 범죄명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9%, ‘약간 그렇다’ 40.6%로 87.5%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3점이다. 검찰의 「범죄분석」은 정작 중요한 형법범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오히려 특별법범이 법률 중심으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경찰의 「범죄통계」역시 검찰의 통계와 비슷하나 형법범을 더 세분화하였다. 「2011년 범죄통계」에서는 뒤에서 다시 기술하겠지만 범죄통계의 죄명 분류를 기존의 형법전의 장 중심이 아니라 ‘위반행위속성 및 범익침해유형’을 기준으로 형법과 특별법을 통합하였고, 예전에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본 년도 범죄통계분석은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인 죄종은 범죄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을 추가로 제시하여 기존의 377개에서 395개로 확대하였다. 특히 강간강제추행범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특별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표 22> 죄명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세부 범죄명 제공 필요성

		사례수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2.5	40.6	46.9	4.3
전공	사회과학	32	6.3	46.9	46.9	4.4
	법학	32	18.8	34.4	46.9	4.3

“피해품을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1.9%, ‘약간 그렇다’ 45.3%로 67.2%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8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품을 세분화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로 피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23> 피해품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6.3	26.6	45.3	21.9	3.8
전공	사회과학	32	9.4	15.6	43.8	31.3	4.0
	법학	32	3.1	37.5	46.9	12.5	3.7

“범행방법별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6.6%, ‘약간 그렇다’ 48.4%로 75.2%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0점이다. 현재 범행방법에 대해서는 강도수법과 절도수법, 사기수법⁹⁾, 강도발생장소와 수법, 절도발생장소와 수법,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등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범행방법 및 수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되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 24> 범행방법별 분석 필요성

		사례수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25.0	48.4	26.6	4.0
전공	사회과학	32	18.8	50.0	31.3	4.1
	법학	32	31.3	46.9	21.9	3.9

“범죄의 본질이 같을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된 법 규정과 상관없이 합쳐서 제시해야 한다 (범죄행위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9.4%, ‘약간 그렇다’ 42.2%로 51.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5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2011년 범죄통계」에서는 범죄통계의 죄명 분류를 기존의 형법전의 장 중심이 아니라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을 기준으로 형법과 특별법을 통합하였다.

<표 25> 범죄의 본질이 같을 경우 범죄행위중심으로 합쳐야할 필요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3.1	7.8	37.5	42.2	9.4	3.5
전공	사회과학	32	6.3	0.0	37.5	43.8	12.5	3.6
	법학	32	0.0	15.6	37.5	40.6	6.3	3.4

9) 금년에는 사기수법은 결측치가 너무 많아 분석의 의미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미수사건과 기수사건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1.3%, ‘약간 그렇다’ 50.0%로 81.3%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1점이다. 미수와 기수의 분리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2011년 범죄통계」의 경우,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였다.

<표 26> 미수사건과 기수사건 구분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17.2	50.0	31.3	4.1
전공	사회과학	32	3.1	12.5	46.9	37.5	4.2
	법학	32	0.0	21.9	53.1	25.0	4.0

“특별법범 수집통계 내용을 수준과 죄명에 따라 재정리해서 제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9.1%, ‘약간 그렇다’ 46.9%로 86.0%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2점이다. 경찰의 「2011년 범죄통계」의 경우, 기존 범죄통계분석에서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 구분한 것을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형식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에 통합(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9조의 강간 등 살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 항목에 통합)하였고,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실질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도로 제시함. 주로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표 27> 특별법범 수집통계 내용 수준과 죄명에 따른 재정리 필요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12.5	46.9	39.1	4.2
전공	사회과학	32	3.1	12.5	46.9	37.5	4.2
	법학	32	0.0	12.5	46.9	40.6	4.3

“경찰의 5대 범죄를 확장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주요 지표범죄로 선정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8.1%, ‘약간 그렇다’ 40.6%로 68.7%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3.9점이다.

경찰의 「2011년 범죄통계」의 경우에는 주요 지표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

도, 폭력 및 사기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28> 경찰의 5대 범죄를 확장한 주요 지표범죄로 선정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6.3	25.0	40.6	28.1	3.9
전공	사회과학	32	6.3	15.6	50.0	28.1	4.0
	법학	32	6.3	34.4	31.3	28.1	3.8

“지표범죄는 범죄, 피의자, 피해자, 피해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2.8%, ‘약간 그렇다’ 43.8%로 76.6%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0점이다.

경찰의 「2011년 범죄통계」의 경우, 지표범죄는 5년간의 발생 및 검거추세, 피의자의 성별 연령분포,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발생시간, 범행시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도구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9> 지표범죄의 범죄, 피의자, 피해자, 피해품 등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4.7	18.8	43.8	32.8	4.0
전공	사회과학	32	3.1	6.3	50.0	40.6	4.3
	법학	32	6.3	31.3	37.5	25.0	3.8

“범죄의 성격에 따라 통계원표의 양식을 다양화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1.3%, ‘약간 그렇다’ 42.2%로 73.5%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0점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죄원표들은 강절과 사기사건에 초점을 두고 제작한 것으로서 최근에 발생한 사이버범죄나 경제범죄 등 범죄성격이 다른 범죄에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지표범죄는 보다 세분하고 그 외의 범죄는 특성에 맞게 원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법의 경우에는 가족의 영향이 중요하므로 성인과 달리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탁종연 외, 2008).

<표 30> 범죄의 성격에 따른 통계원표 양식 다양화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6.3	20.3	42.2	31.3	4.0
전공	사회과학	32	9.4	18.8	43.8	28.1	3.9
	법학	32	3.1	21.9	40.6	34.4	4.1

“현재의 통계원표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0.6%, ‘약간 그렇다’ 42.2%로 82.8%가 동의하고 있으며 5점 만점에 4.2점이다.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원표의 내용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통계원표의 내용을 보다 더 세분화해야 한다.

<표 31> 현재의 통계원표 내용 세분화구체화 필요성

		사례수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64	1.6	15.6	42.2	40.6	4.2
전공	사회과학	32	3.1	12.5	40.6	43.8	4.3
	법학	32	0.0	18.8	43.8	37.5	4.2

5)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에 중요한 점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통계 내용(원표)의 적정성 향상’이 38.2%이며, ‘범죄통계 입력의 정확성 향상’이 35.3%이다. 다만 전공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다.

<표 32> 기술적 측면에서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에 중요한 것

	전 체	전공	
		사회과학	법학
사례수	68	33	35
범죄통계 입력의 정확성 향상	35.3	39.4	31.4
범죄통계 내용(원표)의 적정성 향상	38.2	30.3	45.7
범죄통계자료 공개 수준 향상	8.8	12.1	5.7
통계자료의 품질관리 노력	13.2	9.1	17.1
기타	4.4	9.1	0.0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통계 작성기준의 재정비’ 45.6%, ‘범죄통계 관리 전담부서 확대’ 38.2%이다. 이역시 전공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33> 제도적 측면에서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에 중요한 것

	전 체	전공	
		사회과학	법학
사례수	68	33	35
범죄통계관리 전담 부서 확대	38.2	39.4	37.1
통계교육 및 감사 능력 강화	4.4	6.1	2.9
범죄통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권한 강화	5.9	6.1	5.7
범죄통계 관련 법규의 재정비	4.4	6.1	2.9
범죄통계 작성기준의 재정비	45.6	39.4	51.4
기타	1.5	3.0	0.0

6) 범죄통계 현실화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사항

범죄통계 현실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범죄통계를 치안 및 형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강해야 한다”가 34.9%로 가장 높고, “작성기관 또는 담당자의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가 27.0%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응답되었다.

<표 34> 범죄통계 현실화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사항

	전 체	전공	
		사회과학	법학
사례수	63	32	31
성과평가를 위한 통계왜곡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17.5	15.6	19.4
범죄통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강해야 한다	34.9	37.5	32.3
사건목살, 통계미입력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7.5	15.6	19.4
작성기관 또는 담당자의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27.0	25.0	29.0
기타	3.2	6.3	0.0

III.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1년 범죄통계」 공동발간

1. 범죄통계 분석 활용연구팀 발족

경찰은 1964년부터 범죄통계를 입력해 왔으나, 단순 발생·검거건수 위주의 통계산출에 그쳐 범죄통계의 경찰행정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사실 매년 발간하는 ‘범죄통계’ 책자(917p) 역시 분량은 많으나 유가치한 분석정보가 많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실정이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통계’ 책자 등 가공된 통계자료만 제공받아 심층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표출해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자체 전문인력과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범죄통계 원자료(raw data) 접근을 적극 희망하였다. 또한 범죄통계를 국가기관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지역생활안전정보로 분석·가공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경찰청 수사국, 2012). 이에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1년 체결한 MOU 후속조치의 하나로 금년 1월 「범죄통계 분석활용 추진팀」을 구성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2011년 범죄통계」를 공동발간하였다.

2. 「2011년 범죄통계」의 주요 특징

「2011년 범죄통계」 책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범죄통계의 죄명 분류를 기존의 형법전의 장 중심이 아니라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을 기준으로 형법과 특별법을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법 위반 범죄는 기존에 특별법명에 따라 단순 구분하였으나 본 년도부터는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에 통합하였고,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도로 제시하였다. 주로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의 강간범죄는 강간·강제추행범죄로 재분류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심으로 상세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속범죄’로 분류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에 분류하였다. 다만,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

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13세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은 실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항목에 입력하는 관행 때문에 이에 합산하였다.

살인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범죄자유형별 분석에는 여성범죄자, 미성년범죄자, 학생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전과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이외에 최근의 범죄실태를 반영하여 외국인범죄자와 고령범죄자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정확한 의미의 검거율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 중에 2011년에 검거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하나 기존에는 단순히 2011년에 발생한 사건 대비 2011년에 검거한 사건의 비율로서 이 수치에는 2011년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검거사건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검거율’이라는 용어를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의 비율’로 수정하였다.

책자의 구성방식 역시 기존에는 범죄개요, 범죄분석도(그래프), 범죄통계표로만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범죄개요,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 유형별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범죄발생시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등 많은 항목에 미상 또는 미분류 항목을 추가하는 등 결측치를 구분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¹⁰⁾.

가. 죄종분류의 개선목적

기존 범죄통계는 죄종을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형법과 특별형법 모두 7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개정 범죄통계는 기존의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범죄 이외에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특별형법범에 해당하는 죄종을 일반형법범과 통합하여 각각의 해당 죄종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모두 15개 범죄로 죄종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상세분류 및 재분류의 목적은 범죄통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즉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범죄양상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범죄유형의 합리적 분류가 출발점이 된다. 범죄유형별 양상과 추세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안정책이 수립되고 실천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1년 범죄통계」의 일러두기를 참고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통계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으니 추후 참고하기 바람.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죄명분류의 기준

따라서 범죄통계의 분류에서 각 죄명의 분류는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유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범죄양상의 현실부합적이고 체계일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종분류의 원칙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죄종의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위반행위속성이 제1분류원칙이고, 범죄피해-법익침해유형이 제2분류원칙이 된다.

형법이론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죄종을 분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내지 위반행위속성은 범죄행위자 또는 가해자에 관련된 표지이며, 범죄피해 내지 법익침해유형은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표지이다. 치안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은 범죄행위자이므로, 본 범죄통계에서는 범죄-위반행위의 속성을 우선적인 분류원칙으로 삼았다.

예컨대 손괴죄의 경우 주로 물건의 현상이나 효용을 감실케 하는 침해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재산범죄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위반행위의 속성은 대부분 폭력적인 파괴행위로서, 특히 중손괴죄의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발생까지도 이를 수 있는 행위 속성을 가지므로, 폭력범죄의 하나로 분류하게 된다.

다. 특별법범의 재분류

기존 범죄통계는 형법범-특별법범을 구분·분류하고 있으나, 형법범 대·소분류에서 강도, 강간,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직권남용, 증수뢰의 상세분류에는 특가법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증수뢰, 횡령, 배임의 상세분류에는 특경법 유형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형법범 이외의 특별법범을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구분한 것을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형식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에 통합하여 상세분류하였다.

반면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실질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로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병역범죄 등의 유형으로 상세분류하였다.

그 구체적 재분류는 다음과 같다.

	죄종별구분 (특별법법)	대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도로교통법(교통사고)	교통범죄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특가법(도주차량)			
4	도로교통(무면허운전)			
5	도로교통법(음주운전)			
6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7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8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9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1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범죄		
11	공직선거법			
12	변호사법	기타		
13	출입국 관리법	기타		
14	소년법	기타		
15	상법	기타		
16	경범죄처벌법	기타		
17	국가보안법	안보범죄		
18	보건범죄특조법 (부정식품)	보건범죄		
19	보건범죄특조법 (부정의약품)			
20	보건범죄특조법 (부정의료업자)			
21	부정수표단속법	특별경제범죄		
22	특가법(국고손실)			
23	특가법(범죄단체조직)	절도범죄		
24	특가법(외국인을위한재 산취득)	경제범죄		
25	특가법(보복범죄 등)	폭력범죄	폭행	
26	특경법(재산국의도피)	특별경제범죄		
27	특경법(사금융알선등)			
28	특경법 (저축관련부당행위)			
29	특경법 (무인가단기금융법)			
30	특경법 (보고의무)	기타		
31	특경법 (취업제한 등)	기타		
32	주민등록법	기타		
33	전투경찰대설치법	병역범죄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타		

35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강력범죄	방화	
36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기타		
37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기타		
3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기타		
39	청소년 보호법	기타		
40	부동산 중개업법	기타		
4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범죄	풍속	
4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도박	
43	밀항 단속법	기타		
44	조세법 처벌법	특별경제범죄		
45	특가법 (조세)			
46	관세법			
47	특가법 (관세)			
48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49	새마을금고법			
50	외국환거래법			
51	병역법	병역범죄		
52	향토예비군 설치법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섭에 관한 법률	기타		
5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별경제범죄		
55	공연법	기타		
5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기타		
57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타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타		
59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타		
60	문화재 보호법	기타		
61	저작권법	특별경제범죄		
6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기타		
63	농지법	기타		
64	양곡 관리법	기타		
65	축산물 가공처리법	기타		
66	어업자원 보호법	환경범죄		
67	수산자원 보호령			
68	산림법	기타		
69	특가법 (산림)	환경범죄		
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7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기타		
72	도시가스 사업법	기타		
7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타		
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기타		
75	특허법	특별경제범죄		
76	실용신안법			
77	의장법			
78	상표법			
79	계량에 관한 법률	기타		
80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81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82	주차장법	기타		
83	건축법	기타		
84	수도법	기타		
85	하수도법	기타		
86	도로법	기타		
87	하천법	기타		
88	골재채취법	기타		
89	식품위생법	보건범죄		
90	장사등에관한법률	기타		
91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범죄		
92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93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		
9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기타		
95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범죄		
9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타		
98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9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00	유해화학물질법(환각물질흡입등)	기타		
10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환경범죄		
102	자연환경보전법			
103	의료법	보건범죄		
104	약사법			
105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마약범죄		
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마약)			
107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			
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향정)			

109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대마)			
110	아동복지법	기타		
111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1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	노동범죄		
113	근로기준법			
114	산업안전보건법			
115	직업안정법			
116	자동차관리법	기타		
117	선박안전법	기타		
118	철도안전법	기타		
119	전과법	기타		
120	여권법	기타		
12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122	공유수면관리법	기타		
123	국민연금법	기타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125	남시 어선업법	기타		
126	내수면어업법	기타		
127	농산물 품질 관리법	기타		
128	담배사업법	기타		
1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경제범죄		
130	민사소송법	기타		
131	배타적경제수역의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법률	기타		
132	석유사업법	기타		
133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기타		
134	선박직원법	기타		
135	수산물품질관리법	기타		
136	수산업법	기타		
1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1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139	영해 및 접속 수역법	기타		
140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기타		
1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	특별경제범죄		
1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143	자연공원법	기타		
144	전기통신기본법	기타		
145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146	전염병예방법	보건범죄		
1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기타		
148	증권거래법	경제범죄		
149	지방세법			
150	지하수법	기타		
151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력범죄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주거침입, 절도강간 등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기타		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
				매매
				성매수 등
				강요행위 등
		기타		알선영업행위 등
합의강요				
비밀누설				
		기타 위반		
152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153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154	학교보건법	보건범죄		
155	항만운송사업법	기타		
1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157	의료기기법	기타		
158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	성매매	
159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범죄		
16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161	디자인보호법	특별경제범죄		
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164	기 타 법 률			

라. 상세분류의 죄명

대-소분류는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범죄통계 분류죄명을 가능한 한 유지하였고, 특별법법의 상세분류 죄명은 대검예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2.1.16 개정)의 죄명표시에 따랐다. 동 예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

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연법위반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사건, 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수산업법위반사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등에 관하여 죄명을 제시하고 있다. 당해 죄명들은 일반적으로 법조문상의 표제를 따르고 있으며, 법조문상의 표제 역시 주로 범죄 내지 위반행위의 속성을 반영하여 제시된 표지다.

마. 성폭력범죄 상세분류의 개선

특히 성폭력범죄 죄종의 경우 여러차례의 개정과 다수의 특별법으로 인해 상세분류 대상인 범죄유형이 많다. 기존 대검예규는 형법 및 신규 특별법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범죄통계에서는 범죄행위 속성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 행위유형별로 각 해당 형법과 신규 특별법상의 조문을 통합, 각각 상세분류상의 죄명을 부여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상세분류상의 죄명을 정리하였다.

대검예규		범죄통계
형법	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강간치상(준강간치상) 강간치사(준강간치사) 강제추행치상(준강제추행치상) 강간등살인 강제추행치사(준강제추행치사) 미성년자간음추행(심신미약자) 피보호자(감호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	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특강법(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 강간치상(준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
	특강법	강제추행
	특가법	특가법(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주거침입, 절도)강간등] " " (특수강간등강간등) " " (특수강간) " " (특수강제추행) "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p>사건</p>	<p>물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p>	<p>특수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p> <p>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p> <p>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제추행)/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p>
<p>아동· 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 위반사건</p>	<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합의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비밀누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기타)</p>	<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p> <p>아동·청소년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매매))</p> <p>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성매수))</p> <p>아동·청소년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p> <p>아동·청소년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p> <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강요등)</p> <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p> <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광고)</p> <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 ·청소년)</p> <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p> <p>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p>

* 밑줄친 죄명은 기타범죄에 분류

IV. 공식 범죄통계 개선방안

1. 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

공식 범죄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범죄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공식 범죄통계가 범죄양상의 주요지표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및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이를 적극 활용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통계의 중요성이 전제되지 않고 원표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기에도 바쁜 수사관들이 통계를 제대로 입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는 가능한 한 결측치를 줄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결측치가 많게 되면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결측치를 줄여야한다. 물론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결측치를 줄여야하고 가능한 한 기타에 체크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사실 이 문제도 범죄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있다. 왜냐하면 중요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하기 보다는 대충 기타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산시스템 상에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 항목도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길게 나열된 경우에는 대충 기타에 입력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결측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를 살펴보면, Cohen(1998)의 살인에 대한 특별보고서(the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 SHR)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980년에서 1983년까지 미국의 카운티에서 중범죄와 강도와 연관된 상황에 대한 15세에서 39세의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남성 범죄자의 살인율을 조사하였는데 결측치가 많아 60%의 범죄자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어떤 카운티는 값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SHR상의 살인자료가 UCR자료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왜냐하면 살인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경찰에 신고도 더 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SHR자료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이 많으나, 자료에는 결측치가 많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없이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결측치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 자료 분석에서도 밝혀졌다. 즉 살인의 발생사건 중 기수사건과 피해자 사망사건의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났는데(황지태, 2011), 금년에 경찰청과 「2011년 범죄통계」 공동발간을 위해 경찰의 원자료를 분석해보니 그 이유가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¹¹⁾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살인사건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명확하여 그 어느 사건보다 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경찰의 범죄통계자료에는 결측치나 미분류 사건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범죄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분석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1) 2011년 자료는 원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신체사망사건에 대한 결측치는 가능한 한 재입력하도록 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본 자료집의 박형민(2012)의 '공식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참조.

결측치를 가능한 한 줄이고 미분류 역시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통계 매뉴얼제작 및 배포, 범죄통계 교육, 통계전문요원 확보, 범죄정보입력시스템의 개선, 범죄통계 관리 강화 및 감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 범죄통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무엇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입력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범죄통계 작성기준을 재정비하고 매뉴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범죄통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죄통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성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범죄통계에 제공된 검거율의 작성기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검거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사건 중 검거된 사건의 비율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거율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사건 중 검거된 사건만의 비율이 아니라 특정 연도에 발생한 사건 대비 특정 연도에 검거한 사건의 비율일 뿐이다. 즉 발생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검거사건도 포함된 비율인 것이다.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예규 제348호)’ 및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57호)’과 ‘경찰범죄통계실무지침’에 따라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들도 이 기준만으로 작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범죄통계교육

매뉴얼 제작이 완성되면 배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통계자료입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관에 대한 범죄통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 4월 경찰청 수사과에서 처음으로 범죄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범죄통계개요, 범죄통계원표 작성방법, 범죄통계승승인 및 산출방법, 주요 오류 입력항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일선 경찰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이들 역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범죄통계 매뉴얼의 제작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통계전문요원 확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범죄통계관리 전담부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경찰 범죄통계의 경우 범죄통계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통계 담당자가 통계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한두명이 이를 모두 관리하기는 어려우므로 통계전담 전문인력의 충원은 시급하다.

라, 범죄정보입력시스템의 개선

입력오류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정보입력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시스템 상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지일자가 발생일자보다 앞선다거나 검거일자에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일자가 입력된다는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에서 입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래하지 않는 날짜는 컴퓨터 상의 현재 날짜와 비교하여 보다 앞선다면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하는 방법이다.

마. 범죄통계 관리 강화 및 감사

영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경찰청의 전국범죄입건기준의 준수여부와 범죄통계체계관리에 대해서는 경찰감사청과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어 일관성, 수사관의 잠정 범죄분류, 수사관련 지휘체계의 영향력 배제, 기록자료의 정확성, 각 지방경찰청 관할내 합의된 통계감독체계 개선 등을 감사하는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감사는 범죄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식범죄통계 결과를 기관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식 범죄통계의 정확성 지표를 기관의 성과와 연계시키는 분리시키도록 독립된 통계품질 관리가 필요함

2. 범죄통계 내용의 적정성

범죄통계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NIBRS개발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는 범죄통계에 대한 요약보고서인 UCR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건중심의 범죄통계 보고시스템인 NIBRS를 통해 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NIBRS¹²⁾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주제와 방법

론 관련 연구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D'Alessio & Stolzenberg(2003)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심각한 폭행범죄(강도, 단순 폭행, 집단 폭행)를 저지른 범죄자 중 백인이 흑인보다 더 많이 체포되었다는 점이고, 강간은 흑인 범죄자가 백인보다 약간 많이 체포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NIBRS을 통해 공개한 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범죄양상의 이해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범죄통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범죄통계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UN 경제 및 사회문제 담당부서의 통계분과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경찰 및 검찰의 범죄통계에서는 범죄 발생,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 범죄의 총계와 관련한 질문들

범죄유형별 발생빈도는 얼마인가?

범죄율은 얼마인가? 국가의 어떤 지역이 가장 높은 범죄율을 나타내는가?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특정 범죄 유형이 있는가?

가족 범죄(family crime)가 얼마나 만연하게 나타나는가?

(b) 범죄자 특성과 관련한 질문들

범죄자 수는 몇 명인가?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범죄자와 피해자가 비슷한가?

누가 “전형적인” 범죄자인가?

어떤 범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의 유형이 있는가?

전문적인 범죄자(career criminal)의 특성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청소년기가 범죄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가?

여성이 범죄에 더 관여되고 있는가?

범죄자의 가족, 사회 경제, 교육적 배경은 무엇인가?

범죄자의 삶에서 약물과 알코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12) 이에 대해서는 본 자료집, 강지현(2012)의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사례’ 참조

또한, 모든 범죄에 대해 같은 내용의 통계를 수집하기보다는 범죄유형에 따라 분석 항목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인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지표범죄는 좀더 상세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범죄통계 자료 활용도 제고방안

Reise(1991)는 대부분의 범죄예방개입대책이 의도된 효과를 산출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하기 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구가 범죄예방의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특별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며, 범죄 예방과 범죄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개입대책들을 개발·선별하는 데에 연구가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통계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통계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자료의 공개는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전에는 단지 매년 「미국에서의 범죄」라는 책자만이 발간되었으나,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데이터의 질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나 공개이후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연구들이 촉진되었고, 앞에서 언급한 결측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거의 90%이상은 공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표 35>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공개에 대한 의견

	사례수	전혀중요하지않음	별로중요하지않음	보통	약간중요함	매우중요함	평균
원자료 형식으로 학자에게 제공	63	1.6	3.2	4.8	30.2	60.3	4.4
웹버전공개, 표나 엑셀파일 다운로드	63	1.6	6.3	1.6	25.4	65.1	4.5
원자료 공개를 통한 연구자료 활용도 제고	63	4.8	4.8	19.0	71.4	4.6	3.6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데이터 마스킹을 거친 원자료 공개	63	3.2	3.2	30.2	63.5	4.5	3.9

가. 공개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50만개 이상의 사회과학 관련 연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 아카이브(data archive)인 미국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 Social Research)의 공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데이터 마스킹을 한 후 원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특정인에게만 원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특정인에게만 특정 장소에서만 원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금년 경찰청과 공동 작업에서도 원자료는 데이터 마스킹을 거쳐 개인정보는 삭제한 채로 경찰청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원자료가 담긴 컴퓨터에는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USB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나. 학술대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미국에서는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과 국립형사사법자료보관소(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 NACJD)의 모기관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 Social Research)에서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자료를 이용한 학술대회와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원자료를 학자들에게 공개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공개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를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치안정책이나 형사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이드북 제공

최근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 통계로는 2010년 1,251명이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내용이 있다(프레시안, 7월 20일자 기사). 사실 이 기사는 범죄통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발간한 「2010년 범죄통계」에서 살인사건의 건수에는 살인건수 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 예비음모, 자살방조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통계 책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산출되는 방식이나 통계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등에 가이드북¹³⁾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경찰청과 「2011년 범죄통계」를 공동 발간한 것을 계기로 이 책자에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다.

다. 물론 일러두기에서 주요사항은 알려주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4. 범죄통계 분석의 신뢰성 제고 방안 : 범죄분석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은 연방수사국(FBI)에서 전국의 17,000여개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범죄관련 자료인 UCR(Uniform Crime Report) 및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을 포함하여, 범죄, 범죄자, 범죄피해자 및 사법시스템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전국범죄피해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범죄학자가 약60명 정도가 자료 분석, 피해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범죄통계자료 수집과 별도로 독립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과 법학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의 신뢰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찰청과 「2011년 범죄분석」의 공동발간을 위한 원자료 분석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 특히 경찰의 범죄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범죄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1년에 연구보고서를 출간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거의 몇십년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관련 보고서나 논문의 개선방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에 이 글에서는 이들 의견에다 원자료를 실제로 분석하면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공식 범죄통계에 대해 다소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년에 처음으로 원자료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범죄통계자료의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노력과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그리고 원자료의 공개는 앞으로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안정책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지현(2012).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립, 관리 및 활용사례. 경찰 공식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세역·탁종연(2007). 범죄통계.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경찰청 수사국(2012). 범죄통계업무자료.
- 김은경(2008). 국가 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박정선·정병하·탁종연·황정인(2009).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법무연수원.
- 김준호·이동원(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선(2007).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형민(2011).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공식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종연(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한국경찰연구, 5(2), 59~80.
- 탁종연(2007).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7(3), 169~194.
- 탁종연·전영실·이희갈·심수진(2008).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통계개발원.
- 프레시안 2012년 7월 30일자 기사. 통영·제주 살인 사건, 진짜 불편한 진실은?
- 황지태(2011). 범죄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방법론 성찰. 범죄와 비행, 창간호, 139~163.

Blau, J. R., & Blau, P. M.(1982). The cost of inequality : metropolitan structure and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14~129.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2003).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United Nations Publication.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89e.pdf

Shaw, M., van Dijk, J., & Rhomber, W. (2000). Determining Trends in Global Crime and Justice : an Overview of Results from the United Nations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Forum on Crime and Society*, 3, 35~63.

Skogan, W. (1974). The Validity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55(1), 25~38.

UN,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

제 2 주제

공식 범죄통계 원자료 분석 사례 :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국가의 공식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에 대한 반영으로 경찰과 검찰의 국가 공식통계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학문분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해 왔으며,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범죄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국가 공식통계를 사용해서 보도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식 범죄통계는 매년 빈도표가 실려있는 책자의 형태로 발간되어 학계와 일반에 공개되었다. 따라서 빈도표를 활용하여 하나의 변수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거나, 하나의 변수의 추세분석은 가능했으나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불가능했다.

그 밖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일차적인 자료의 입력을 담당하는 만큼 작성과정에 많은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해 왔으나, 공식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온 것도 중요한 한계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커다란 한계는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원자료가 학계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범죄통계의 수집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왔기 때문에 범죄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통계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의 공동작업으로 범죄통계의 개선작업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청에서 수집하고 관리해 왔던 공식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민간에 공개하여 공식 범죄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식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오류(실수, 누락 등)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실제로 공동작업의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수정되었다는 성과도 이루었다. 물론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만, 올해의 작업을 첫걸음으로 하여 국가 공식통계가 보다 정확히 작성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통상 살인 범죄로 알려져 있는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매년 약 1,100건에서 1,4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

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율은 2.5 내외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 상 ‘살인’ 항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공식 범죄통계상 ‘살인’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실제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살인 미수, 살인 음모/예비 등의 죄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사람을 직접 살해하지 않은 자살 방조라는 죄명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살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의 행위는 각각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의 분류체계에 흡수되어 있어 살인의 범주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살인범죄의 집계방식은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표 1> 살인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2007년~2011년)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7년	1,113	2.3	1,069	1,255
2008년	1,111	2.3	1,087	1,216
2009년	1,374	2.8	1,341	1,479
2010년	1,252	2.5	1,228	1,331
2011년	1,204	2.4	1,154	1,285

물론 지금까지의 작성방법이 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집계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인간의 실제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상해와 살인 미수의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살인 미수의 경우 실제 공격행위가 없더라도 무기를 소지하고 살해의 의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살인 미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살인 미수나 음모, 예비 등의 행위를 ‘살인’이라는 범주로 함께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통계작성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식통계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물론 기존의 공식통계에서도 <신체피해 상황>이라는 빈도표를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정은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여부를 나타내는 발생원표와 피의자의 특징을 보고하는 피의자원표가 단절되면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의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찰청 범죄통계개선사업을 통해 연구자들이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 사망 사건만을 따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피의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식 범죄통계의 구조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공식 범죄통계는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세 원표를 근거로하여 작성되고 있다. 이 중 발생원표는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이 인지했을 때 작성되는 것으로 발생 당시의 특징과 피해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검거원표는 피의자가 검거될 때 작성되는 것으로 범죄수법, 공범수, 검거단서, 회수품 등과 관련된 항목들이 기록되어 발생원표와 대응하여 작성된다. 즉 하나의 검거원표는 하나의 발생원표에 연결되며, 이후에 추가로 피의자가 검거된다 하더라도 검거원표는 하나만 작성되는 것이다. 반면, 피의자원표는 피의자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전과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기록되며, 각 피의자별로 작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발생-검거원표에 해당하는 피의자원표는 다수가 될 수도 있다.

<표 2> 공식범죄통계 원표의 포함항목

원표종류	항목
발생원표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발생년월일시, 인지년월일시,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발생일특수사정,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지, 발생장소, 재산피해정도, 재산피해품명, 재산피해품액수, 신체상해정도, 신체사망남자명수, 신체사망여자명수, 외국인피의자여부, 외국인국적, 외국인신분 등
검거원표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년월일, 발생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범죄수법,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법인여부, 검거인원남자명수, 검거인원여자명수, 기수미수구분, 공범수, 범행도구종류, 범행도구조치, 범행도구입수방법,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장물금전소비용도, 회수품명, 회수정도 등
피의자원표	최종검거수사기관, 죄명, 적용법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행시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소속, 공무원계급, 공무원직무와관련성, 외국인신분, 전과, 재범전회처분내용, 재범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과의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 자백여부, 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등

3. 피해자 사망사건의 분류

이제 우리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만을 추출해서 분석을 시작할 것이다. 앞선 기존 통계 집계방식을 나타내는 <표 1>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에서 1,204건의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발생원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살인’으로 구분된 사건 중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402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7건의 자살교사/방조가 속해있으며,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망을 이르게 한 또 다른 행위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피해자 사망 사건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3> 참조).

1군은 ‘살인’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강도살인, 강간등살인 등의 죄명을 포함한다. 2군은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피의자의 폭력이나 범죄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범죄군으로서 ‘폭력성범죄 치사’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명은 방화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제추행치사, 유기 등이다. 3군은 ‘과실치사’ 또는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범죄군으로서, 자살교사방조, 손괴, 의료법, 교통범죄, 과실치사 등의 죄명을 포함한다.

<표 3> 피해자 사망 발생 사건 분포

구분	죄명	빈도	비율
합계		2,882	100.00%
1군 (살인)	살인소계	435	15.09%
	살인	331	11.49%
	영아살해	12	0.42%
	존속살해	48	1.67%
	촉탁, 승락살인	1	0.03%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3	0.10%
	강도살인, 치사	36	1.25%
	특수강도	1	0.03%
	강간등살인	3	0.10%

구분	죄명	빈도	비율
2군 (폭력성 범죄 치사)	폭력성범죄 치사 소계	205	7.11%
	현주,현존(건조물등)방화치상	2	0.07%
	현주,현존(건조물등)방화치사	15	0.52%
	강제추행치사(준)	1	0.03%
	존속상해치사	5	0.17%
	상해치사	83	2.88%
	상해	3	0.10%
	폭행치사	83	2.88%
	폭행치상	1	0.03%
	폭행	1	0.03%
	존속폭행치사	3	0.10%
	절도	4	0.14%
	유기의죄	2	0.07%
	체포,감금치사상	2	0.07%
	3군 (과실치사 및 기타)	과실치사등 소계	2,242
자살교사,방조		7	0.24%
의료법		1	0.03%
과실사상의죄		408	14.1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5	0.17%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	0.10%
특가법(도주차량)		133	4.6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36	1.25%
교통방해의죄		1	0.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0.03%
기타교통범죄		1,631	56.59%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	0.03%
손괴의죄		4	0.14%
실화밧업무상실화죄		5	0.17%
신앙에관한죄		3	0.10%
기타		3	0.10%

이 구분에 따르면 기존의 살인 범주에 들어있던 자살교사방조는 3군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살인 범주에서는 제외되었던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은 1군으로 분류된다.

발생원표를 기준으로 할 때, 1군에 속하는 사례는 기존에 살인범주에 속해있던 402건에 자살교사/방조를 제외하고, 강도살인 및 강간살인을 더해 435건(15.09%)으로 나타났으며, 2군에 속하는 사례는 205건(7.11%), 3군에 속하는 사례는 2,242건(77.79%) 이었다.

결국 발생원표에 나타난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은 모두 2,882건 이며, 이중 피해자가 1인인 경우가 2,781건, 2인인 경우가 79건, 3인인 경우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4>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의 사망자 수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1명	2,781	96.5	96.5
2명	79	2.7	99.2
3명	15	0.5	99.8
4명	5	0.2	99.9
5명	2	0.1	100
합계	2,882	100	

발생원표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피해자 사망사건을 다른 변수들과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원표들을 연결해 주는 키값(key value)을 사용하여 발생원표와 검거원표를 일차적으로 연결하고, 각 발생원표에 연결되는 피의자 원표를 추가하여 연결하였다. 이때 하나의 발생원표에 다수의 피의자원표가 연결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대표 피의자 1명만을 연결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발생원표와 검거원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발생원표를 기준으로 변수값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발생원표에 기록되어있는 변수만을 분석할 때에는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2,882건이 사용되었으나, 검거원표 및 피의자 원표에 기록되어 있는 변수를 분석할 때에는 2011년에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과 2011년에 검거되었으나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공범들에 대한 사항도 이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4. 피해자 사망사건의 특성

가. 피의자 특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피의자 성별	남자	322 82.8%	160 87.9%	1913 89.9%	2395 88.8%
	여자	67 17.2%	22 12.1%	214 10.1%	303 11.2%
전체		389 100.0%	182 100.0%	2127 100.0%	2698 100.0%

피의자 사망사건 피의자는 남성이 88.8%, 여성이 11.2%로 남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군범죄 피의자 중 여성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범행시 연령	10대	8 2.1%	10 5.5%	30 1.4%	48 1.8%
	20대	37 9.5%	16 8.8%	240 11.2%	293 10.8%
	30대	93 23.9%	28 15.4%	402 18.8%	523 19.3%
	40대	123 31.6%	63 34.6%	602 28.1%	788 29.1%
	50대	78 20.1%	46 25.3%	561 26.2%	685 25.3%
	60대	32 8.2%	14 7.7%	223 10.4%	269 9.9%
	70대 이상	18 4.6%	5 2.7%	81 3.8%	104 3.8%
전체		389 100.0%	182 100.0%	2139 100.0%	2710 100.0%

1군범죄 피의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2군범죄 피의자의 연령분포는 40대, 50대, 30대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0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도 비율은 5.5%에 불과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인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3군범죄 피의자의 연령분포는 40대, 50대, 30대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 중 50대, 60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학력	불취학	4 1.0%	2 1.1%	9 .4%	15 .6%
	초등학교	40 10.3%	19 10.4%	132 6.2%	191 7.0%
	중학교	54 13.9%	28 15.3%	142 6.6%	224 8.2%
	고등학교	138 35.5%	77 42.1%	1007 46.9%	1222 45.0%
	대학교 (4년미만)	19 4.9%	10 5.5%	109 5.1%	138 5.1%
	대학교 (4년이상)	22 5.7%	17 9.3%	334 15.6%	373 13.7%
	대학원	6 1.5%	3 1.6%	42 2.0%	51 1.9%
	기타	19 4.9%	3 1.6%	85 4.0%	107 3.9%
	미상	87 22.4%	24 13.1%	285 13.3%	396 14.6%
전체		389 100.0%	183 100.0%	2145 100.0%	2717 100.0%

1군 범죄 피의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 재학 또는 중퇴, 이하 같음)가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3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으며, 반면 초등학교, 중학교, 미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군 범죄 피의자의 학력분포 역시 고등학교 가장 높으나 초등학교 중학교의 비율이 3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3군 범죄 피의자의 학력분포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고등학교의 비율 다소 높으며, 4년제 이상 대학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생활정도'	하류	265 80.8%	127 76.0%	1198 58.9%	1590 62.9%
	중류	59 18.0%	38 22.8%	803 39.5%	900 35.6%
	상류	4 1.2%	2 1.2%	33 1.6%	39 1.5%
전체		328 100.0%	167 100.0%	2034 100.0%	2529 100.0%

피의자의 생활정도를 살펴보면, 1군과 2군은 하류의 비율이 약 80%가량으로 나타나 하류에 속하는 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3군은 약 60% 정도가 하류에 속하고, 40%

정도는 중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3군 범주의 피의자의 생활 수준이 다소 높은 모습을 나타낸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전과	1범	46 13.9%	19 11.2%	340 16.7%	405 16.0%
	2범	22 6.6%	14 8.3%	241 11.8%	277 10.9%
	3범	25 7.5%	10 5.9%	182 8.9%	217 8.6%
	4범	24 7.2%	13 7.7%	104 5.1%	141 5.6%
	5범	19 5.7%	9 5.3%	86 4.2%	114 4.5%
	6범	15 4.5%	10 5.9%	59 2.9%	84 3.3%
	7범	8 2.4%	9 5.3%	45 2.2%	62 2.4%
	8범	12 3.6%	6 3.6%	32 1.6%	50 2.0%
	9범이상	56 16.9%	29 17.2%	96 4.7%	181 7.1%
	없음	105 31.6%	50 29.6%	852 41.8%	1007 39.7%
전체		332 100.0%	169 100.0%	2037 100.0%	2538 100.0%

전과가 없는 피의자의 비율은 1군과 2군이 약 30%가량인데 반해 3군은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과가 없었던 피의자의 비율은 3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전과라 할 수 있는 전과 1-2범도 3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전과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1군과 2군에 속하는 범주의 피의자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1군과 2군 범주 피의자는 약 17% 가량으로 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데에 반해, 3군 범주 피의자의 비율은 약 5% 정도의 비율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재범종류	이종	209 92.9%	94 81.0%	924 78.6%	1227 80.9%
	동종	16 7.1%	22 19.0%	252 21.4%	290 19.1%
전체		225 100.0%	116 100.0%	1176 100.0%	1517 100.0%

전과가 있었던 경우 1군범죄 피의자의 약 7% 정도만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2군범죄와 3군범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범죄특성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공범유무	단독범	363 90.5%	162 87.6%	2076 95.3%	2601 94.1%
	공범	38 9.5%	23 12.4%	103 4.7%	164 5.9%
전체		401 100.0%	185 100.0%	2179 100.0%	2765 100.0%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 중 공범이 있었던 사례는 1군범죄의 9.5%, 2군범죄의 12.4%, 3군범죄의 4.7% 로 나타나, 2군 범죄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범이 발견되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피해자와의 관계'	국가			65 3.2%	65 2.6%
	공무원	1 0.3%		2 0.1%	3 0.1%
	고용자	4 1.2%		70 3.4%	74 2.9%
	피고용자			75 3.7%	75 3.0%
	직장동료	8 2.4%	11 6.6%	84 4.1%	103 4.1%
	친구	15 4.6%	17 10.2%	28 1.4%	60 2.4%
	애인	40 12.2%	14 8.4%	12 0.6%	66 2.6%
	동거친족	102 31.0%	33 19.8%	49 2.4%	184 7.3%
	기타친족	23 7.0%	4 2.4%	28 1.4%	55 2.2%
	거래상대방	4 1.2%	1 0.6%	8 0.4%	13 0.5%
	이웃	13 4.0%	7 4.2%	35 1.7%	55 2.2%
	지인	25 7.6%	16 9.6%	22 1.1%	63 2.5%
	타인	55 16.7%	41 24.6%	1416 69.7%	1512 59.8%
	기타	39 11.9%	23 13.8%	139 6.8%	201 7.9%
전체		329 100.0%	167 100.0%	2033 100.0%	2529 100.0%

1군범죄의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거친족 31.0%, 애인 12.2% 등 정서적으로 친밀함이 요구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군범죄에서 타인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약 2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1군만큼은 아니지만 동거친족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약 20%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친구나 애인의 비율도 각각 10% 정도 나타난다.

3군범죄의 경우는 타인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약 7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동료, 고용자, 피고용자 등 같은 직장에 속해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친족이나 애인, 친구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범행시 정신상태	정상	181 55.2%	80 47.9%	1860 91.5%	2121 83.9%
	정신이상	12 3.7%	3 1.8%	4 0.2%	19 0.8%
	기타정신장애	22 6.7%	1 0.6%	1 0.0%	24 0.9%
	주취	113 34.5%	83 49.7%	167 8.2%	363 14.4%
전체		328 100.0%	167 100.0%	2032 100.0%	2527 100.0%

3군 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피의자는 거의 대부분 정상의 상태였으며, 약 10% 정도가 알콜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2군 범죄의 약 50% 가량은 알콜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1군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약 35%가량으로 알콜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군범죄에서는 정신이상이나 정신장애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도 약 10%가량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범행동기'	생활비마련	9 2.7%	1 0.6%	1 0.0%	11 0.4%
	유혹비마련	5 1.5%			5 0.2%
	도박비마련	4 1.2%			4 0.2%
	치부	4 1.2%			4 0.2%
	기타 이유	20 6.1%	6 3.6%	30 1.5%	56 2.2%
	가정불화	52 15.8%	13 7.8%	1 0.0%	66 2.6%
	유혹		1 0.6%	3 0.1%	4 0.2%
	우발적	141 42.9%	92 55.1%	71 3.5%	304 12.0%
	현실불만	14 4.3%	4 2.4%	2 0.1%	20 .8%
	부주의	1 0.3%	4 2.4%	1387 68.3%	1392 55.1%
	기타	79 24.0%	46 27.5%	537 26.4%	662 26.2%
전체		329 100.0%	167 100.0%	2032 100.0%	2528 100.0%

범행동기는 각 범주의 정의와 연관되어 분포가 형성되었는데, 1군범죄에서는 우발적 살인이 약 40%를 나타내며, 가정불화로 인한 범죄가 약 15% 가량으로 나타났다.

2군범죄에서는 우발적 범죄가 약 55%, 가정불화로 인한 범죄가 약 8% 가량으로 나타났다.

3군범죄는 그 정의상 부주의에 의한 사건이 70% 정도로 나타나며, 기타로 구분된 것과 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범행의 동기가 없는 것이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자백여부	자백	229 70.9%	97 58.4%	1853 91.4%	2179 86.6%
	일부자백	59 18.3%	41 24.7%	128 6.3%	228 9.1%
	부인	30 9.3%	27 16.3%	39 1.9%	96 3.8%
	묵비	5 1.5%	1 0.6%	8 0.4%	14 0.6%
전체		323 100.0%	166 100.0%	2028 100.0%	2517 100.0%

체포 이후 피의자의 자백여부를 살펴보면, 3군범죄 피의자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군범죄 피의자는 약 70%가 자백하고, 약 20%가량이 일부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군범죄 피의자의 경우 약 60%만 자백하고, 약 25%는 일부만 자백하였으며, 약 15% 정도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해자 특성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피해자 성별	남자	198 45.6%	148 72.2%	1486 66.6%	1832 63.9%
	여자	236 54.4%	57 27.8%	744 33.4%	1037 36.1%
전체		434 100.0%	205 100.0%	2230 100.0%	2869 100.0%

1군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자가 45.6%, 여자가 54.4%로 여자가 약간 많았으나, 반면 2군범죄와 3군범죄는 남자 피해자가 약 70% 내외를 차지하여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피해자 연령	6세이하	17 3.9%	3 1.5%	32 1.5%	52 1.9%
	12세이하	13 3.0%	6 2.9%	29 1.3%	48 1.7%
	15세이하	4 0.9%	9 4.4%	19 0.9%	32 1.1%
	20세이하	11 2.5%	7 3.4%	61 2.8%	79 2.8%
	30세이하	44 10.1%	15 7.3%	147 6.8%	206 7.3%
	40세이하	56 12.9%	26 12.7%	157 7.2%	239 8.5%
	50세이하	118 27.1%	61 29.8%	336 15.5%	515 18.3%
	60세이하	82 18.9%	41 20.0%	416 19.2%	539 19.2%
	60세초과	90 20.7%	37 18.0%	970 44.7%	1097 39.1%
	미상			1 0.0%	1 0.0%
전체		435 100.0%	205 100.0%	2168 100.0%	2808 100.0%

1군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50세 이하(40대), 60세이하(50대), 40세이하(30대)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6세이하, 12세 이하 등 아동이 피해자가 된 비율이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군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50세이하(40대), 60세이하(50대), 60세초과 등의 순서였는데,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3군 범죄의 피해자는 60세초과, 60세이하(50대), 50세이하(40대)의 순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고연령자가 많았으며, 특히 3군범죄 피해자 중 60세초과의 비율은 44.7%로 절반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피해자 피해시 상황	취침중	37 8.5%	7 3.4%	14 0.6%	58 2.0%
	일하는중	18 4.1%	3 1.5%	381 17.0%	402 13.9%
	부재중	3 0.7%	3 1.5%	3 0.1%	9 0.3%
	담화중	137 31.5%	75 36.6%	6 0.3%	218 7.6%
	혼잡중	2 0.5%		17 0.8%	19 0.7%
	보행중	8 1.8%	2 1.0%	374 16.7%	384 13.3%
	판테 정신 잃어서	4 0.9%	1 0.5%	9 0.4%	14 0.5%
	속아서	3 0.7%			3 0.1%
	기타	176 40.5%	95 46.3%	1333 59.5%	1604 55.7%
	미상	47 10.8%	19 9.3%	105 4.7%	171 5.9%
전체	435 100.0%	205 100.0%	2242 100.0%	2882 100.0%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면 1군과 2군 범죄에서는 담화중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피해자가 취침중에 발생한 사건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3군 범죄에서는 일하는 중이나 보행중에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해자 피해시 상황이라는 항목은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기타와 미상의 비율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결측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분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은 피해자 사망사건으로서 대표적인 대인범죄들이라 할 수 있는데, 피해자 피해시 상황이 ‘부재중’으로 나타난 사례도 나타난다.

		사망사건유형			전체
		1군(살인)	2군(폭력성 치사)	3군(과실치사등)	
범행 도구	소지무	91 22.7%	121 67.6%	1739 79.8%	1951 70.7%
	총기	2 .5%		1 .0%	3 .1%
	도검류	175 43.6%	8 4.5%		183 6.6%
	둔기	33 8.2%	10 5.6%	1 .0%	44 1.6%
	줄(끈)류	33 8.2%	1 .6%	2 .1%	36 1.3%
	독극물 (약품)	8 2.0%	1 .6%	1 .0%	10 .4%
	기타	59 14.7%	38 21.2%	435 20.0%	532 19.3%
전체	401 100.0%	179 100.0%	2179 100.0%	2759 100.0%	

1군 범죄에서는 도검류가 사용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군범죄와 3군 범죄에서는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3군범죄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5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5. 1군 살인 사건 분석

여기에서는 주요변수인 피의자 성별, 피의자 연령, 피해자 성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공범유무 등의 변화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들 변수와 함께 살펴본 변수는 학력, 전과, 범행시 정신상태,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행도구, 재범기간, 재범종류, 범행동기, 생활정도, 자백여부 등이 있으며, 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차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 중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살인범죄자 성별에 따른 특성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과'	없음	68 24.5%	37 67.3%	105 31.6%
	1범	37 13.4%	9 16.4%	46 13.9%
	2범	18 6.5%	4 7.3%	22 6.6%
	3범	24 8.7%	1 1.8%	25 7.5%
	4범	22 7.9%	2 3.6%	24 7.2%
	5범	19 6.9%	0 .0%	19 5.7%
	6범	14 5.1%	1 1.8%	15 4.5%
	7범	8 2.9%	0 .0%	8 2.4%
	8범	12 4.3%	0 .0%	12 3.6%
	9범이상	55 19.9%	1 1.8%	56 16.9%
전체		277 100.0%	55 100.0%	332 100.0%

$\chi^2=48.517$ $p=.000$

살인 범죄자의 성별과 전과를 함께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사건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피의자의 비율이 2/3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전과 3범 이상의 피의자는 5명(9.1%)에 불과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과가 많은 피의자들이 많았으며, 특히 전과 9범이상 피의자의 비율도 약 20%에 육박했다.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피해자와의 관계	공무원	1 .4%	0 .0%	1 .3%
	고용자	4 1.5%	0 .0%	4 1.2%
	직장동료	8 2.9%	0 .0%	8 2.4%
	친구	15 5.5%	0 .0%	15 4.6%
	애인	38 13.8%	2 3.7%	40 12.2%
	동거친족	72 26.2%	30 55.6%	102 31.0%
	기타친족	15 5.5%	8 14.8%	23 7.0%
	거래상대방	4 1.5%	0 .0%	4 1.2%
	이웃	11 4.0%	2 3.7%	13 4.0%
	지인	25 9.1%	0 .0%	25 7.6%
	타인	51 18.5%	4 7.4%	55 16.7%
	기타	31 11.3%	8 14.8%	39 11.9%
전체		275 100.0%	54 100.0%	329 100.0%

$\chi^2=37.046$ $p=.000$

살인범죄 피의자의 성별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동거친족을 살해한 사례가 55.6%, 기타친족을 살해한 사례가 14.8%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범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정서적으로 친밀함이 요구되는 가정의 문제가 살인에 이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동거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전체의 약 1/4가량에 불과하며, 타인을 살해한 비율은 여성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애인을 살해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범행시 정신상태'	정상	147 53.6%	34 63.0%	181 55.2%
	정신이상	8 2.9%	4 7.4%	12 3.7%
	기타정신장애	15 5.5%	7 13.0%	22 6.7%
	주취	104 38.0%	9 16.7%	113 34.5%
전체		274 100.0%	54 100.0%	328 100.0%

$\chi^2=12.898$ $p=.005$

살인범죄자의 성별과 범행시 정신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인을 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정신이상이나 정신장애의 상태에서 살인을 한 비율도 남성에 비해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약 40% 정도의 사례는 주취상태에서 살인을 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피해자성별'	남자	140 43.5%	40 59.7%	180 46.3%
	여자	182 56.5%	26 38.8%	208 53.5%
	불상		1 1.5%	1 .3%
전체		322 100.0%	67 100.0%	389 100.0%

$\chi^2=11.216$ $p=.004$

살인범죄 피의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성별을 함께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을 살해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여성은 남성을 살해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피해자연령'	6세이하	1 .3%	14 20.9%	15 3.9%
	12세이하	5 1.6%	7 10.4%	12 3.1%
	15세이하	1 .3%	2 3.0%	3 .8%
	20세이하	7 2.2%	2 3.0%	9 2.3%
	30세이하	39 12.1%	1 1.5%	40 10.3%
	40세이하	43 13.4%	7 10.4%	50 12.9%
	50세이하	98 30.4%	10 14.9%	108 27.8%
	60세이하	64 19.9%	9 13.4%	73 18.8%
	60세초과	64 19.9%	15 22.4%	79 20.3%
전체		322 100.0%	67 100.0%	389 100.0%

$\chi^2=93.122$ $p=.000$

살인범죄 피의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연령을 함께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서 30세 이하(20대)부터 60세이하(50대)의 피해자를 살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61세 이상의 노인을 살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피해자 피해시 상황'	취침중	20 6.2%	15 22.4%	35 9.0%
	일하는중	12 3.7%	2 3.0%	14 3.6%
	부재중	2 .6%	0 .0%	2 .5%
	담화중	124 38.5%	4 6.0%	128 32.9%
	혼잡중	1 .3%	1 1.5%	2 .5%
	보행중	7 2.2%	0 .0%	7 1.8%
	판데정신잃어서	3 .9%	1 1.5%	4 1.0%
	속아서	3 .9%	0 .0%	3 .8%
	기타	119 37.0%	34 50.7%	153 39.3%
	미상	31 9.6%	10 14.9%	41 10.5%
전체		322 100.0%	67 100.0%	389 100.0%

$\chi^2=42.393$ $p=.000$

살인범죄 피의자의 성별과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취침중에 살해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담화중에 살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취침중에 살해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여성이 가지는 신체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의 경우 담화중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범행도구	소지무	63 20.1%	20 29.9%	83 21.8%
	총기	2 .6%	0 .0%	2 .5%
	도검류	149 47.5%	21 31.3%	170 44.6%
	둔기	26 8.3%	4 6.0%	30 7.9%
	줄(끈)류	25 8.0%	6 9.0%	31 8.1%
	독극물(약품)	3 1.0%	5 7.5%	8 2.1%
	기타	46 14.6%	11 16.4%	57 15.0%
전체		314 100.0%	67 100.0%	381 100.0%

$\chi^2=17.758$ $p=.007$

살인범죄 피의자의 성별과 범행도구를 함께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도검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독극물이나 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데, 여성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던 조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살인범죄자 연령에 따른 특성

		범행시 연령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생활 정도'	하류	1 14.3%	30 85.7%	68 79.1%	86 87.8%	58 84.1%	14 63.6%	8 72.7%	265 80.8%
	중류	6 85.7%	5 14.3%	16 18.6%	11 11.2%	10 14.5%	8 36.4%	3 27.3%	59 18.0%
	상류	0 .0%	0 .0%	2 2.3%	1 1.0%	1 1.4%	0 .0%	0 .0%	4 1.2%
전체		7 100.0%	35 100.0%	86 100.0%	98 100.0%	69 100.0%	22 100.0%	11 100.0%	328 100.0%

$\chi^2=33.130$ $p=.001$

살인범죄 피의자의 연령과 생활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10대 이하의 피의자들의 생활수준이 중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70대 이상의 피의자들도 중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행시 연령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범행기	이욕	1 14.3%	9 25.7%	10 11.6%	12 12.2%	9 12.9%	1 4.5%		42 12.8%
	가정불화		3 8.6%	13 15.1%	15 15.3%	13 18.6%	4 18.2%	4 36.4%	52 15.8%
	우발적	6 85.7%	12 34.3%	35 40.7%	42 42.9%	33 47.1%	9 40.9%	4 36.4%	141 42.9%
	현실불만		2 5.7%	8 9.3%	2 2.0%	1 1.4%		1 9.1%	14 4.3%
	부주의						1 4.5%		1 .3%
	기타		9 25.7%	20 23.3%	27 27.6%	14 20.0%	7 31.8%	2 18.2%	79 24.0%
전체		7 100.0%	35 100.0%	86 100.0%	98 100.0%	70 100.0%	22 100.0%	11 100.0%	329 100.0%

$\chi^2=44.071$ $p=.047$

살인범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10대 피의자의 경우 우발적인 살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0대 피의자의 경우 이욕으로 인한 살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0대 피의자들은 현실불만이 동기가 된 살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0대 이상의 피의자들은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행시 연령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피해자 연령	6세이하	1 12.5%	3 8.1%	9 9.7%	1 .8%		1 3.1%		15 3.9%
	12세이하	2 25.0%	2 5.4%	3 3.2%	5 4.1%				12 3.1%
	15세이하				2 1.6%			1 5.6%	3 .8%
	20세이하	1 12.5%	3 8.1%	1 1.1%	3 2.4%	1 1.3%			9 2.3%
	30세이하		8 21.6%	22 23.7%	4 3.3%	4 5.1%	1 3.1%	1 5.6%	40 10.3%
	40세이하		5 13.5%	23 24.7%	14 11.4%	7 9.0%	1 3.1%		50 12.9%
	50세이하	2 25.0%	5 13.5%	13 14.0%	58 47.2%	23 29.5%	6 18.8%	1 5.6%	108 27.8%
	60세이하	1 12.5%	8 21.6%	5 5.4%	11 8.9%	35 44.9%	11 34.4%	2 11.1%	73 18.8%
	60세초과	1 12.5%	3 8.1%	17 18.3%	25 20.3%	8 10.3%	12 37.5%	13 72.2%	79 20.3%
전체		8 100.0%	37 100.0%	93 100.0%	123 100.0%	78 100.0%	32 100.0%	18 100.0%	389 100.0%

$\chi^2=217.806$ $p=.000$

살인범죄 피의자의 연령과 피해자의 연령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살인범죄 피의자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 피의자는 10대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0대 피의자는 20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외가 있다면 20대와 30대 피의자들이 6세 이하의 아동을 살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최빈값은 동일 연령대의 피해자들이었다.

다. 살인범죄 피해자 연령에 따른 특성

		피해자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피해자와의 관계'	공무원	1 .6%	0 .0%	1 .3%
	고용자	4 2.5%	0 .0%	4 1.2%
	직장동료	8 5.0%	0 .0%	8 2.4%
	친구	14 8.8%	1 .6%	15 4.6%
	애인	2 1.3%	38 22.6%	40 12.2%
	동거친족	39 24.4%	62 36.9%	101 30.8%
	기타친족	10 6.3%	13 7.7%	23 7.0%
	거래상대방	2 1.3%	2 1.2%	4 1.2%
	이웃	9 5.6%	4 2.4%	13 4.0%
	지인	21 13.1%	4 2.4%	25 7.6%
	타인	28 17.5%	27 16.1%	55 16.8%
	기타	22 13.8%	17 10.1%	39 11.9%
	전체	160 100.0%	168 100.0%	328 100.0%

$\chi^2=76.288$ $p=.000$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는 친구나 지인, 이웃 등에게 살해당하는 비율이 여성이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피해자는 애인이나 동거친족에게 살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범행도구	소지무	29 15.7%	61 28.4%	90 22.5%
	총기	1 .5%	1 .5%	2 .5%
	도검류	98 53.0%	77 35.8%	175 43.8%
	둔기	16 8.6%	17 7.9%	33 8.3%
	줄(끈)류	11 5.9%	22 10.2%	33 8.3%
	독극물(약품)	6 3.2%	2 .9%	8 2.0%
	기타	24 13.0%	35 16.3%	59 14.8%
전체		185 100.0%	215 100.0%	400 100.0%

$\chi^2=19.505$ $p=.003$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과 사용된 도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도검류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과 독극물(약품)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줄(끈)류에 의해 살해되거나 별다른 도구 없이 살해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특성

여기에서는 세분화되어 있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친족’, ‘친구애인’, ‘직장동료’, ‘이웃지인’, ‘타인’, ‘기타’의 6개의 범주로 재분류하여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친족’은 동거친족과 기타친족을 포함하며, ‘친구애인’은 친구와 애인이 빈도를 합한 것이다. ‘직장동료’은 기존의 직장동료에 고용자, 거래상대방을 더한 값을 사용했으며, ‘이웃지인’은 이웃과 지인의 빈도를 더하여 사용했다. ‘타인’은 최초의 세분화된 값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기타’는 기존의 기타 값에 공무원이라는 범주를 더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전체
		'친족'	'친구애인'	'직장동료'	'이웃지인'	'타인'	'기타'	
범행동기	이욕	6 4.8%	4 7.3%	2 12.5%	8 21.1%	19 34.5%	2 5.0%	41 12.5%
	가정불화	44 35.5%	3 5.5%			2 3.6%	3 7.5%	52 15.9%
	우발적	49 39.5%	30 54.5%	10 62.5%	22 57.9%	22 40.0%	8 20.0%	141 43.0%
	현실불만	5 4.0%	1 1.8%		2 5.3%	2 3.6%	4 10.0%	14 4.3%
	부주의	1 0.8%						1 0.3%
	기타	19 15.3%	17 30.9%	4 25.0%	6 15.8%	10 18.2%	23 57.5%	79 24.1%
전체		124 100.0%	55 100.0%	16 100.0%	38 100.0%	55 100.0%	40 100.0%	328 100.0%

$\chi^2=124.076$ $p=.000$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동기를 함께 살펴보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정불화가 원인이 된 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친구애인,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우발적인 살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욕을 추구하기 위한 살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웃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도 이욕이 동기가 된 사례와 우발적인 행동이 동기가 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자와의 관계'						전체
		'친족'	'친구애인'	'직장동료'	'이웃지인'	'타인'	'기타'	
'범행시 정신상태'	정상	69 56.1%	28 50.9%	8 50.0%	19 50.0%	27 49.1%	29 72.5%	180 55.0%
	정신이상	7 5.7%			2 5.3%	1 1.8%	2 5.0%	12 3.7%
	기타정신장애	17 13.8%		1 6.3%	1 2.6%	3 5.5%		22 6.7%
	주취	30 24.4%	27 49.1%	7 43.8%	16 42.1%	24 43.6%	9 22.5%	113 34.6%
전체		123 100.0%	55 100.0%	16 100.0%	38 100.0%	55 100.0%	40 100.0%	327 100.0%

$\chi^2=35.688$ $p=.002$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시 정신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친족이 피해자가 되었던 살인범죄는 정신이상이나 정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친구애인, 직장동료, 이웃지인, 타인 등이 피해자가 된 사건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자와의 관계’						전체
		‘친족’	‘친구·애인’	‘직장동료’	‘이웃·지인’	‘타인’	‘기타’	
공범유무	“단독범”	118 95.2%	53 96.4%	15 93.8%	36 94.7%	44 80.0%	31 79.5%	297 90.8%
	“공범”	6 4.8%	2 3.6%	1 6.3%	2 5.3%	11 20.0%	8 20.5%	30 9.2%
전체		124 100.0%	55 100.0%	16 100.0%	38 100.0%	55 100.0%	39 100.0%	327 100.0%

$\chi^2= 19.436$ $p=.002$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공범유무를 함께 살펴보면, 타인이 피해자가 된 사건 중 공범이 있었던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타로 분류된 관계역시 공범이 있었던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친족 등 면식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단독범에 의해 살해된 비율이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 범행시 공범여부에 따른 특성

		공범유무		전체
		단독범	공범	
‘범행시 정신상태’	정상	155 52.4%	26 86.7%	181 55.5%
	정신이상	12 4.1%		12 3.7%
	기타정신장애	21 7.1%		21 6.4%
	주취	108 36.5%	4 13.3%	112 34.4%
전체		296 100.0%	30 100.0%	326 100.0%

$\chi^2=13.367$ $p=.004$

범행시 공범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범행시 정신상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독범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공범이 있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정신이상이나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나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공범이 있는 범죄는 정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정신이상이나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공범유무		전체
		단독범	공범	
범행동기	이욕	33 11.1%	9 30.0%	42 12.8%
	가정불화	50 16.8%	2 6.7%	52 15.9%
	우발적	134 45.1%	7 23.3%	141 43.1%
	현실불만	13 4.4%	1 3.3%	14 4.3%
	부주의		1 3.3%	1 .3%
	기타	67 22.6%	10 33.3%	77 23.5%
전체		297 100.0%	30 100.0%	327 100.0%

$\chi^2=23.652$ $p=.000$

범행시 공범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단독범의 경우 가정불화, 우발적 행위, 현실불만 등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이욕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범유무		전체
		단독범	공범	
범행도구	소지무	83 22.9%	8 21.1%	91 22.7%
	총기	2 .6%	0 .0%	2 .5%
	도검류	166 45.7%	9 23.7%	175 43.6%
	둔기	28 7.7%	5 13.2%	33 8.2%
	줄(끈)류	25 6.9%	8 21.1%	33 8.2%
	독극물(약품)	7 1.9%	1 2.6%	8 2.0%
	기타	52 14.3%	7 18.4%	59 14.7%
전체		363 100.0%	38 100.0%	401 100.0%

$\chi^2=14.194$ $p=.028$

범행시 공범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사용된 도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은 공범유무와는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단독범의 경우 도검류를 사용하여 살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둔기나 줄(끈)류를 사용하여 살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공식범죄통계 중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추출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기존 공식통계에서 왜곡되게 보고 되었던 ‘살인’의 실제 분포를 살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1군범죄로 구분한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살펴보아 보다 세부적인 특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에 인구 10만명당 2.5 내외로 보고되었던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율이 알려진 것보다는 다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보고되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의 빈도가 전체 살인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 혹은 비면식관계의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범죄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실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지금까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더욱 키졌을지도 모른다.

이제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원자료 분석의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범죄들의 실제 현상에 대한 탐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식범죄통계 자체가 우리사회의 범죄현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식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공식통계에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실제 범죄현상과는 다른 분석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산한 귀중한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며, 이는 다시 통계자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분석하지 아니하였기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실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술적인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많은 단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분석이 빈도분석과 교차표 분석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실제 공식 범죄통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거의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정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더 의미있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이상의 변수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도 가능했으나, 원자료를 경찰청내에서만 분석할 수 있었다는 물리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 시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들면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취침중 살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것을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누구를 취침중에 더 많이 살해했는지를 살펴본다든지, 친족을 살해할 때 어떠한 동기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남성이 주취중 살해한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담화중 살해한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기회를 통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시작으로 공식범죄통계의 원자료가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고, 우리나라 범죄현상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 3 주제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사례

강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1. 서론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 혹은 특정 지역의 범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인력 및 자원의 배분 결정과 범죄의 양상이나 특정지역에의 범죄 집중 등을 고려한 범죄예방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식 범죄통계는 대부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친 범죄의 변화를 관찰하고 범죄추세를 분석하는데도 적극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 혹은 특정 지역의 범죄실태 파악의 기초가 되는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 또한 존재하는 바, 그 대표적 내용으로는 사법기관의 법적 해석에 따른 범죄의 기록 및 누락의 문제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만 기록되어 암수범죄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사법기관의 중점 정책이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이 있다(박정선, 2008).

공식 범죄통계의 중요성과 문제점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논제로 거론되는 것은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과 이러한 수집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 그리고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곽대경 외 2008). 이러한 통계들은 대부분 통계를 집계한 기관이 스스로 요약해서 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통계를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요약해서 발행하는 현재의 공식 범죄통계의 발간 형태는 통계의 집계 과정 및 관리에 대해서도 통계를 수집하는 기관에서 전담하는 실정인 바, 외부 전문가가 그러한 통계의 집계 과정 및 관리과정에 대한 이해 및 검토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과 미국의 공식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식 범죄통계 중에서 특히, 외국과의 비교 기준의 일치 및 경찰통계가 가지는 공식 범죄통계로서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경찰이 수집, 집계, 발표하는 공식 범죄통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의 공식 범죄통계는 UCR과 NIBRS로 대변되는데, UCR에서 NIBRS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상과 NIBRS의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영국에서 최근 범죄통계의 수집 및 발간과 관련한 변화와 통계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방안에 주목하기로 하겠다.

외국의 범죄통계에 대한 소개는 이미 다른 연구나 관련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범죄통계에 대한 소개는 간략히 하고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활용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과 미국 양국의 형사사

법기관이 수집하는 공식 범죄통계의 관리 및 활용 과정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공식 범죄통계에의 개선방안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 관리 및 활용 실태

1) UCR과 NIBRS¹⁾

미국의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식통계인 UCR과 NIBRS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FBI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UCR(Uniform Crime Report)과 NIBRS(National Incident Based Reporting System)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적 차원의 공식 범죄 통계이다. 먼저, UCR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 공개하는 모든 과정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는 United Crime Report Program (줄여서 UCR program)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자료이다. 다만, 법률²⁾로 FBI가 UCR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FBI는 이러한 UCR program을 통해서 미국의 범죄(Crime in the United States), 근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법집행관에 대한 통계(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 그리고 증오범죄 통계(Hate Crime Statistics)의 세 가지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UCR 프로그램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료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위의 세 가지 통계자료를 FBI가 발간하기 전까지는 범죄통계 데이터의 발표를 미루는 소위 엠바고를 지킨다.

UCR의 목적은 법집행기관의 협조 및 노력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국가전체에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를 제공하여 국가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의 발생 및 발생범죄의 영향을 추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UCR의 역사적 배경은 192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때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가 국가적 수준의 범죄통계의 수집 필요성을 인식한 것을 계기로, 1930년에 미국의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미국의 범죄 데이터 수집 업무를 FBI에 전담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2010년의 기록에 따르면, 18,000개가 넘는 시, 카운티, 주, 학교/대학 등 다양한 법집행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범죄통계를 FBI에 보고

1) <http://www.fbi.gov/>

2) Title 28, United States Code Section 534(a)(c)

하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5%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집행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UCR은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범죄통계이다.

이러한 UCR program은 (1)Summary Reporting System, (2)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3)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LEOKA) Program, 그리고 (4)Hate Crime Statistics Program의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CR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위반 행위 및 체포에 관한 데이터는 법집행 기관, 즉 경찰기관이 Summary Reporting System 또는 NIBRS로 보고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시스템 중 하나를 이용해서 범죄의 위반행위 및 체포에 관한 자료를 FBI에 보고하고, 이와는 별도로 직무 중 사망/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통계(LEOKA)와 증오범죄통계를 FBI에 각각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무 중 사망 혹은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통계(LEOKA)를 집계하는 목적은 경찰관이 상해 혹은 사망의 피해를 입은 사건의 정황 및 특성등을 분석하여 이를 경찰관의 안전 훈련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반복적인 피해의 재발을 막고자 함이다. 또한, 직무 수행 중에 누군가의 악의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관의 상해 및 사망 피해는 물론, 우연히 혹은 의도치 않게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찰관의 사망 피해에 대한 정보도 기록한다. 직무 중 사망/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통계(LEOKA)에는 현장에서 사용된 무기의 종류, 발생 시간 및 장소, 발생시의 상황, 수행 중이던 직무의 종류 및 성격, 부상의 위치 및 피해 경찰관의 무장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증오 범죄의 통계는 1990년에 공포된 1990 Hate Crime Statistics Act에 의한 것으로 개인의 인종, 종교, 성적 기호(sexual orientation), 혹은 민족성 및 출신국가 등에 관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의무화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는 1996년부터 UCR의 영구적인 통계수집 자료가 되었다. 2009년부터는 성별 및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도 포함하고 있다.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는 NIBRS의 일부로 추가의 별도 양식에 기록되는데, 대부분의 주(state)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살인에 대해서는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먼저, Summary Reporting System은 전통적인 범죄통계 보고형식으로 8가지의 대표적 범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모살 및 유의적 고살(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강간(forcible rape), 강도(robbery), 기증폭행(aggravated assault)와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무단침입(burglary), 절도(larceny-theft),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그리고 방화(arson)의 여덟 가지 범죄는 1군 위반행위(Part I Offenses)에 해

당되며, 단순 폭행(simple assault), 날조 및 위조(forgery/ counterfeiting),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장물(stolen property),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반행위(offenses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약물남용위반(drug abuse violations), 도박(gambling), 기물파손(vandalism)이 2군 위반행위(Part 2 Offenses)에 해당된다. Summary Reporting System은 위계규칙(hierarchy rule)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동일인(들)에 의해 다수의 범죄가 각각의 범죄를 구분하는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경우에, 가장 중한 범죄 1건만이 기록되는 것으로 가장 중한 범죄의 기준은 범죄지표위계(crime index hierarchy)에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규칙은 범죄를 기록·보고하는데에만 적용될 뿐, 법원에 피고인을 기소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살인(justifiable homicide)과 자동차 절도, 그리고 방화범죄는 예외로 위계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Summary Reporting System에서 1군 범죄에 대한 사항들을 집약하는 것과 동시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살인범죄에 대한 정보(범행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정황 등), 사건 해결과 관련한 정보, 체포자 관련 데이터(체포자된 사람의 나이, 성별, 인종 등등), 그리고 각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숫자 등이다. 이러한 Summary Reporting System으로 범죄를 보고하거나, 혹은 해당 주(state) 혹은 경찰관서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NIBRS로 범죄를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NIBRS는 1980년대 후반부터 Summary Reporting System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NIBRS는 이름 그대로 사건(incident) 중심의 범죄통계 보고 시스템인데, 이는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다양한 분석단위로 기록하는 범죄통계를 의미한다. Summary Reporting System이 범죄를 1군 범죄와 2군 범죄로 나누고, 8개의 1군 범죄에 대한 통계를 내는데 반해, NIBRS는 A군과 B군의 두 종류의 위반행위로 나누고 A군 위반행위에서 총 22개의 위반행위 범주(offense categories)에 대해 46개의 위반행위(offenses)를 기록하고 있다. B군 위반행위는 소위 체포자 관련 데이터에 보고된 사건들로서 부정수표, 통금/빈등담/방황위반, 무질서, 음주운전, 가출, 부동산 무단침입 등을 비롯한 총 11개 (10개의 범주와 1개의 '이외 모든 기타' 범주)의 범주를 사용한다. B군 위반행위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NIBRS에 기록되는데, 대부분의 B군 위반행위가 체포자가 있는 경우에만 경찰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종래의 Summary Reporting System에서 보고되었던 8개의 1군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위반행위들이 추가되거나 상세히 구분되어 총 22개의 위반행위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NIBRS의 보고 체계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Summary Reporting

System에서의 8개의 1군 범죄의 정의를 NIBRS에서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NIBRS로 보고된 범죄도 UCR의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경찰 및 법 집행기관에 인지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NIBRS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각 사건을 구성하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종류, 피해자와 가해자(즉, 피의자)의 특성, 도난 당한 물건 및 회수물의 종류 및 가치,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NIBRS는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자료이다.

UCR과 NIBRS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NIBRS는 UCR program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UCR program은 미국의 시, 카운티, 주, 그리고 연방법집행 기관까지 포괄하는 범죄통계수집 프로그램이다. 1930년부터 시작된 UCR program은 그 이후 약 60년 동안 범죄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는데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통계의 활용이 더 활발해졌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더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요구에 의해 UCR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범죄통계를 위해 UCR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러 해에 걸친 연구를 통해 ‘UCR 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이라는 보고서가 미국 법무부 산하의 두 기관인 범죄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과 FBI에 의해 1985년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UCR에 대한 청사진 보고서를 토대로 경찰 및 법집행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UCR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NIBRS가 시행되었다. 또한, 가이드라인과 NIBRS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의 실무가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오랫동안 매우 여러 번의 검토와 회의를 통한 조정 및 실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완성되었다.

NIBRS로 범죄통계를 보고하는 것은 각 주(state) 혹은 개별 경찰관서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2011년 8월의 통계에 따르면, NIBRS는 전체 미국인구의 28%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에 인지된 범죄의 27%, 그리고 FBI의 UCR program에 참여하는 기관의 43%가 NIBRS로 범죄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NIBRS가 UCR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발전한 범죄통계인가 하는 것은 다음의 NIBRS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다. 첫째, NIBRS가 각각의 범죄 사건에 기반하여 사건을 구성하는 위반행위를 자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요약적 범죄통계의 보고만을 가능케 하는 UCR과 구별된다. 둘째, NIBRS가 다루는 범죄를 구성하는 위반행위는 UCR이 다루는 범죄의 종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UCR이 8개의 1군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UCR에서는 총 22개의 위반행위 범주에 대해 46

개의 하위 항목 위반행위를 기록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간 범죄와 가중폭행인데, UCR에서 강간(forcible rape)으로 집계되는 강간범죄는 NIBRS에서는 강제적 성적 위반행위(Sex Offenses, Forcible)와 비강제적 성적 위반행위(Sex Offenses, Nonforcible)의 두 개의 위반행위 범주로 나누어 강간, 강제추행과 도구를 사용한 성폭행, 강제 애무는 강제적 성적위반행위에 포함되고, 근친상간과 의제강간은 비강제적인 성적위반행위에 포함된다. 가중 폭행의 경우에도, UCR에서는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로 수집되는데 반해, NIBRS에서는 폭행관련 위반행위(Assault Offenses)라는 위반행위 범주 아래에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단순폭행(simple assault), 위협(intimidation)을 포함한다.

셋째, NIBRS는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반행위의 정의를 사용한다. UCR에서는 여성만이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데 반해, NIBRS에서는 강간범죄 피해자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여,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 범죄도 기록하였다. 넷째, NIBRS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위반행위를 수집하고 발표하는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도 UCR이 항목에 따른 전체 범죄의 건수나 각각의 범죄의 건수 등을 주로 보고하며 하위범주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데 반해, NIBRS는 각 위반행위범주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들에 대해서 범죄의 건수는 물론 각 범죄의 상세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기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UCR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여 보고함으로써, 범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NIBRS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즉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재산상의 피해상태, 체포자에 대한 정보 등 여러 정보들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또한 가능케 한다. 예를 들면, 범죄발생 시간과 발생장소의 상관관계, 혹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의 분석 등도 NIBRS에서는 가능한데,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UCR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NIBRS의 시행으로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및 범죄 및 대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 및 구성원의 교육·훈련, 정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학술적 연구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NIBRS는 UCR program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바, NIBRS가 시행되어도, 여전히 UCR 프로그램에서의 전통적인 Summary Reporting System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각 주에서 FBI에 범죄통계를 보고하는 시스템은 NIBRS 또는 Summary Reporting System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UCR자료의 수집을 그 원래의 목적으로 하였던 Summary Reporting System의 일반적인 개념들은 NIBRS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각각의 경찰관서에서 수집된 범죄통계를 FBI에 보고하는 절차는 주(state)의 중앙보고기관을 통해 주 전체의 범죄를 일괄적으로 FBI에 보고하거나, 경찰관서가 직접 FBI에 보고

하는 방식이 있다. 미국 전체에서 46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그들 주(state) 안의 모든 관할 지역의 범죄 통계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중앙보고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이처럼, 중앙보고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하는 주(state)에서는 주 내부의 하위 경찰관서들이 중앙보고 기관에 자신들의 범죄통계를 보고하고 이렇게 모아진 주(state) 차원의 범죄통계를 중앙보고기관이 직접 FBI에 보고하는데, 이처럼 중앙보고 기관이 존재하는 주에서는 대부분 하위기관의 범죄통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보고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주(state)에서는 각각의 경찰관서 혹은 법집행 기관들이 직접 FBI에 자신들의 범죄통계를 보고한다. 각 주의 경찰관서들이 주 단위로 혹은 개별적으로 FBI에 범죄통계를 보고함과 동시에 각 주(state)의 UCR 프로그램은 이러한 각각의 경찰관서들이 FBI로부터 범죄통계 관련 정보들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범죄통계 보고의 마감일자 관련 정보, FBI 웹사이트에서 발표되는 정보들을 더 자세히 열람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2) 공식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FBI의 범죄통계에서 집계되는 모든 데이터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주(state)별 중앙보고 기관이 지는데, 중앙보고기관은 각 주에서 집계된 범죄통계를 취합하여 보고하는 의무를 진다. 중앙보고기관이 없는 주(state)에서는 각각의 경찰관서들이 범죄통계의 데이터관리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일차적 데이터 관리의 책임은 범죄통계의 입력부터 초기의 품질관리, 하급 경찰관서들간의 연락(중앙보고기관의 경우), 범죄통계와 관련한 교육훈련 및 감사의 기능을 포함한다. FBI의 UCR program 또한 전체적인 데이터관리의 책임을 지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범죄통계의 입력을 돕기도 하고, FBI 차원에서의 통계 품질관리,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며, 3년 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FBI의 형사사법정보 서비스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 CJIS)를 통해 범죄통계의 발간은 물론 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감사(UCR Quality Assurance Review, QAR)도 행한다. 품질관리를 위한 감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약 4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품질관리 감사는 적어도 3년에 한 번 씩은 실시하는데, 각 주(state)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품질관리의 목적은 모든 주(state)가 Summary Reporting System 또는 NIBRS의 보고방식에 있어서 표준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다. 품질관리 감사는 범죄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역경찰관서의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현장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주의 중앙보고기관이 하급 경찰관서로부터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방침 및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러나,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감사가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7년 6월에 UCR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험적 예비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통계 품질관리 프로그램이 2000년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 서비스과(CJIS)내의 감사팀(Audit Unit)이 담당하는 정기 감사 프로그램이 되었다. 품질관리 감사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2003년까지 총 30개 주(state)와 District of Columbia의 138개 기관이 감사를 거쳤는데, 참여하는 기관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범죄통계자료의 질과 완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3) UCR과 NIBRS의 공개

UCR과 NIBRS는 공공자원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공개 형식은 FBI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엑셀이나 spreadsheet의 형태로 원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보고서 양식의 출판물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일정기간(6개월 혹은 12개월)의 범죄를 나타내는 예비보고서의 형태, ② ‘미국의 범죄(Crime in the United States)’라는 이름으로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 (‘미국의 범죄’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우리 경찰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통계’와 유사한 요약통계집이다), 그리고 ③ 직무 중 사망/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통계(LEOKA)와 ④ 증오범죄 통계(Hate Crime Statistics)도 매년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간된다. 과거에는 매년 약 25,000부씩 인쇄되던 이러한 보고서 형태의 출판물들은 2006년부터는 FBI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온라인 출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원자료의 경우에도, UCR과 NIBRS는 물론 직무 중 사망/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통계(LEOKA)와 증오범죄통계 또한 FBI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자료들은 FBI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범죄관련 자료의 수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미국 법무부 소속기관), 정치 및 사회 조사 연구를 위한 대학간의 컨소시엄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³⁾에서도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국립 형사사법자료보관소(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Data, NACJD)⁴⁾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CPSR과 NACJD의 웹사이트는 해당 자료와 관련한 연구물의 리스트 또한 제공하고 있어, 어떠한 연구논문들이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되었는지도 쉽게 알아볼 수

3) <http://www.icpsr.umich.edu/icpsrweb/ICPSR/>

4) <http://www.icpsr.umich.edu/icpsrweb/NACJD/>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ICPSR과 NACJD 웹사이트에서는 원자료 형식의 공식통계를 그대로 제공하는데, 연구자는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연구목적에 맞도록 자료의 특정 변수만을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구자가 NIBRS에서 원하는 특정 변수만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파일을 만들거나 특정 사례만을 추출하여 분석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 편의성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구성기(interactive code builder)이다. 코드구성기는 사용자가 관심있는 변수 및 분석단위는 물론 개별 사건의 위반 행위 및 피해자의 숫자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파일을 통계프로그램용으로 생성해 주는 도구이다. 그러나, 코드구성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계층구조로 되어있던 데이터 파일이 'record-type'으로 대체되어, 년도별로 'extract file'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범죄통계자료의 데이터구조를 고려하여 코드구성기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파일을 만들기 쉽도록 돕거나, 최근의 변화처럼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매우 발전적인 데이터 공개라 할 수 있다.

FBI에서는 최근에 범죄통계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⁵⁾, 이는 FBI가 BJS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표를 생성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table building t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개의 1군 범죄(Part I offences)에서 방화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범죄에 대해 범죄의 종류 및 원하는 데이터의 지역별 수준과 년도를 선택하면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표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단, 온라인 분석을 위한 지역별 데이터의 종류에는 시(city), 카운티(county), 주(state),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자료가 있는데, 국가 전체와 주별 범죄통계는 196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시와 카운티의 범죄는 1985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와 카운티의 자료는 인구 10,000명 이상의 시와 인구 25,000명 이상의 카운티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5) <http://ucrdatatool.gov/index.cfm>

[그림 1] Indianapolis Metropolitan 경찰관서의 범죄통계 제공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IMPD website's 'Crimes & Incidents > UCR Downloads' page. The header features the IMPD logo and the text 'INDIANAPOLI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A left sidebar contains navigation links such as 'Home', 'About IMPD', 'Employment', 'Crimes & Incidents', 'General Information', 'Crime Trend', 'UCR Downloads', 'M.A.P.S. Incident Mapper', 'Law Enforcement Services', and 'Get Involved'. Below the sidebar is a 'CALENDAR of EVENTS' for August 2012, with a 'View Entire Month' link. A 'Highlighted Events' section lists 'Juror groups required to report Thursday 8/30/12 are: 12, 14, 15, 17, and 94. (8/30/2012)' and ''Show Me The Money' Business Finance Boot Camp (9/12/2012)'.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UCR Downloads'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Downloadable text (.txt) files have been made available via the department's website to provide the official Uniform Crime Report (UCR) Part 1 crime data to the public. The Uniform Crime Report is a program administe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which crime statistics from across the country are reported to the FBI in a uniform manner based on crime definitions determined by the FBI. UCR Part 1 crime groups are murder, rape, robbery, aggravated assault, burglary, larceny, and vehicle theft.' Below this text is a list of download links: 'IMPD UCR 2012', 'IMPD UCR 2011', 'IMPD UCR 2010', 'IMPD UCR 2009', 'IMPD UCR 2008', and 'IMPD UCR 2007'. Further instructions state: 'After clicking on one of the download file names and opening the file, select File - Save As from the menu option to save the file to your computer.' and 'Additional information [PDF icon] regarding the downloadable files is available in .pdf format.' A final note says: 'Requests for assistance in accessing the UCR download file may be submitted via email [Email icon].'

이 외에도 개별 경찰관서에서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범죄통계만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디애나주의 Marison County를 관할하는 Indianapolis Metropolitan 경찰관서는 UCR 중에서 자신들의 경찰관서에 대한 범죄통계만을 따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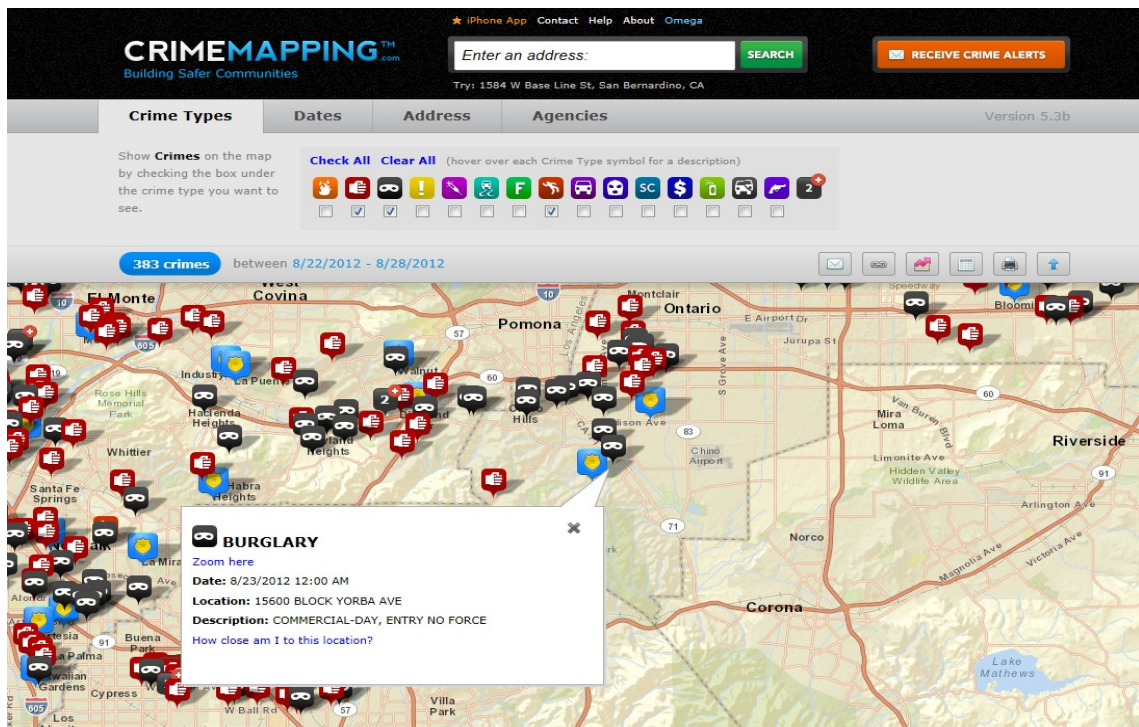
[그림 2] NYPD의 뉴욕 시 관할 구역별 범죄통계 제공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NYPD website's 'Crime Prevention | Crime Statistics' page. The header features the NYPD logo and the slogan 'NEW YORK'S FINEST'. A left sidebar contains navigation links such as 'Search', 'Home', 'FAQ', 'E-mail Alerts', 'Learn About', 'Mission', 'Administration', 'Careers', 'Police Academy', 'Memorials', 'Precincts', 'Precinct Maps', 'Contact Us', 'Be Alert', 'Press Room', 'Rewards', 'Crime Statistics', 'Traffic Data', 'Crime Stoppers', 'Wanted', 'Bank Robbers', 'Submit Internet Tip', 'Missing Persons', 'Crime Prevention', 'Real Estate Fraud - Protect your Property', 'Vandals Task Force', 'Initiatives', 'Coordinators', 'Rewards', 'Crime Prevention Tips', 'Domestic Violence', 'Riding the Subway', 'Subway Information', and 'Counterterrorism'.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rime Prevention | Crime Statistics'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Adobe Reader Download' with a link '*Requires Adobe Acrobat Reader, Click Here', 'City Wide Crime Statistics' with a link 'City Wide Crime Statistics Weekly', and 'Borough and Precinct Crime Statistics'. Below this text is a list of precincts organized by borough: 'Manhattan South' (1st Precinct, 5th Precinct, 6th Precinct, 7th Precinct, 9th Precinct, 10th Precinct, 13th Precinct, Midtown South Precinct, 17th Precinct, Midtown North Precinct), 'Manhattan North' (19th Precinct, 20th Precinct, Central Park Precinct, 23rd Precinct, 24th Precinct, 25th Precinct, 26th Precinct, 28th Precinct, 30th Precinct, 32nd Precinct, 33rd Precinct, 34th Precinct), 'Brooklyn South' (50th Precinct, 51st Precinct, 52nd Precinct, 53rd Precinct, 55th Precinct, 56th Precinct, 58th Precinct, 59th Precinct, 60th Precinct, 62nd Precinct, 63rd Precinct, 64th Precinct, 65th Precinct, 66th Precinct), and 'Brooklyn North' (73rd Precinct, 74th Precinct, 77th Precinct, 79th Precinct, 81st Precinct, 83rd Precinct, 84th Precinct, 85th Precinct, 86th Precinct, 88th Precinct, 89th Precinct, 90th Precinct, 94th Precinct).

6) <http://www.indy.gov/eGov/City/DPS/IMPD/Crimes/Pages/UCRDownload.aspx>

UCR 외에도 각 경찰관서에서 집계한 범죄통계를 월별 또는 주별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관서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뉴욕시를 담당하는 NYPD로, 각 관할구역별로 주간 범죄통계를 제공하고 있다⁷⁾.

[그림 3] LAPD의 범죄지도 제공 화면



또한, LAPD는 주간 범죄통계를 지도에 mapping하여 제공하는데,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사건 번호와 발생일시 및 장소, 그리고 간단한 범죄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한다⁸⁾.

4) 공식 범죄통계의 활용

(1) NIBRS의 활용

공식 범죄통계의 가장 궁극적이고도 기본적인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를 제공하여 범죄의 발생 및 발생범죄의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치안 및 형사사법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각 경찰관서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인 범죄통계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동시에 특정지역의 주요 범죄의 발생 건수는 물론 범죄의 증감이나 간략한 추세 등을 보고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을 추정하고 이를 치안 및 형사사

7) http://www.nyc.gov/html/nypd/html/crime_prevention/crime_statistics.shtml

8) <http://www.crimemapping.com/map.aspx?aid=3db8cf99-a73b-46d2-b218-bd24cf491577>

법대책마련에 활용하는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주(state) 및 경찰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죄지도(crime mapping) 또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관할구역 또는 동네에서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처럼 매우 상세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범죄 발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및 역효과에 대해서는 범죄통계의 제공 및 사용주체인 경찰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몇 건의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체포자의 나이 분포는 어떠한지, 혹은 발생범죄 중 몇 건이 해결되었는지 등 개별질문에 단편적인 답만을 제시하던 UCR의 한계에서 벗어나 NIBRS의 도입으로 공식 범죄통계를 활용하는 폭이 매우 광범위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ICPSR에서는 데이터와 관련 있는 혹은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표된 결과물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UCR 및 NIBRS와 관련 있는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 1965년에 발표된 FBI의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⁹⁾부터 가장 최근인 2012년에 발표된 논문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관련 논문 및 보고서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논문들의 주제가 매우 다양한 것은 NIBRS 도입의 영향이 큰 바, 이는 요약통계집인 UCR과는 달리 NIBRS가 많은 변수들을 다양한 분석단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식 범죄통계(UCR과 NIBRS)와 관련이 있는 논문들 중에서 NIBRS를 활용하여 발표한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주제 및 집필목적에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NIBRS의 특성 및 소개, UCR과의 비교

NIBRS와 관련 있는 논문들 중에는 NIBRS에 대한 소개 및 설명과 함께 향후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된 4편의 매뉴얼이 있는데, 제 1편 자료수집 가이드라인(Data collection Guidelines), 제 2편 자료제출과정에 대한 설명서(Data Submission Specifications), 제 3편사건보고중심의 보고시스템의 실행 길잡이(Approaches to Implementation an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그리고 제 4편 오류 메시지 관련 지침 (Error Message Manual)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UCR과 NIBRS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거나¹⁰⁾,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¹¹⁾, NIBRS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9)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96.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How to Prepare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0) Holt, Marion Ronald. 1989. A Comparison of Incident-Based Crime Reporting and Summary Crime Reporting Systems. D.P.A.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11) Poe, E., Snyder, H.N. 1995. Reliability of the FBI's NIBRS Data: Five Case Studies. OJJDP Bulletin.

이해와 분석을 돕기 위한 논문들¹²⁾ 등이 있다.

② 주요 범죄의 특성 고찰

사건 중심의 데이터 수집 구조인 NIBRS는 특정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살인, 폭력범죄, 배우자/파트너 폭행, 유괴범죄, 증오범죄 등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¹³⁾이 이루어져,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범죄수사 및 예방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NIBRS는 범죄와 다른 여러 가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음주와 범죄의 상관 여부¹⁴⁾, 총기와 폭력범죄의 관계¹⁵⁾, 이혼과 가정폭력범죄의 관계¹⁶⁾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와 음주의 유의미한 상관성에 대한 기대라던가 이혼이 가정폭력범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총기와 폭력범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등, 범죄의 원인 및 범죄와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념이나 고정관념을 실증 연구를 통해서 확인 또는 검증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특정 집단의 범죄 가해 및 피해 문제에 대한 연구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피해 연구에 있어서의 NIBRS의 활용 방안¹⁷⁾, 청소년 유괴범죄의

NCJ 17861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2) Akiyama, Yoshio, Nolan, James. 1999. Methods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NIBRS Data.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225-238.

Dunn, Christopher S., Zelenock, Thomas J. 1999. NIBRS data available for secondary analysi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239-248.

Faggiani, Donald, McLaughlin, Colleen. 1999. Using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Data for strategic crime analysi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181-191.

13) Jarvis, John Patrick. 1992. The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and Its Applications to Homicide Research. Questions and Answers in Lethal and Non-Lethal Violence: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Workshop of the Homicide Research Working Group. Ann Arbor, MI, June 14-16,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aves, Brian A. 1993. Using NIBRS Data to Analyze Violent Crimes. NCJ 14478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Thompson, Martie P., Saltzman, Linda E., Bibel, Daniel. 1999. Applying NIBRS data to the stud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Massachusetts as a case stud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163-180.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0. Kidnaping of Juveniles: Patterns from NIB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116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Messner, Steven F., McHugh, Suzanne, Felson, Richard B. 2004.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ssaults motivated by bias. *Criminology*. 42, (3), 585-618.

14) Greenfeld, Lawrence A. 1998. Alcohol and Crime: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on the Prevalence of Alcohol Involvement in Crime. Prepared for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s National Symposium on Alcohol Abuse and Crime. NCJ 16863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5) Stolzenberg, Lisa, D'Alessio, Stewart J. 2000. Gun availability and violent crime: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Social Forces*. 78, (4), 1461-1482.

16) Stolzenberg, Lisa, D'Alessio, Stewart J. 2007. The effect of divorce on domestic crime. *Crime and Delinquency*. 53, (2), 281-302.

17) Snyder, Howard N. 1995. NIBRS and the Study of Juvenile Crime and Victimization. *Trends, Risks, and*

특징¹⁸⁾이나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¹⁹⁾, 아동 학대 범죄²⁰⁾ 등 특정 집단의 범죄 및 피해문제에 대한 연구들도 있으며, NIBRS를 이용해서 여성에 의한 폭력범죄의 현황 및 특성²¹⁾을 살펴볼 수도 있다.

④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상관관계 연구

NIBRS를 활용해서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간의 특성이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종에 주목하여, 타인종간의 범죄와 같은 인종간의 범죄에 인종 위협(racial threat)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논문²²⁾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의 특징에 대한 연구²³⁾등도 있다.

⑤ 형사사법절차 및 범죄(자) 처리과정에 대한 연구

범죄의 특성이나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안에서 범죄(자)의 처리나 체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공식 범죄통계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체포 여부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별이나 인종이 미치는 영향²⁴⁾을 살펴보는 연구도 있고, 더 나아가, 특정 범죄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²⁵⁾한다거나, 사건 해결(cleara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²⁶⁾ 및 사건 해결까지의

Interventions in Lethal Violenc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Spring Symposium of the Homicide Research Working Group. Atlanta, Georgi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8)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0. Kidnapping of Juveniles: Patterns From NIB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116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 Snyder, Howard N. 2000. Sexual Assault of Young Children as Reported to Law Enforcement: Victim, Incident,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NCJ 18299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1. Child Abuse Reported to the Police.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723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1) Koons-Witt, Barbara A., Schram, Pamela J. 2003.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violent offending by fema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4), 361-371.

22) D'Alessio, Stewart J., Stolzenberg, Lisa, Eitle, David. 2002. The effect of racial threat on interracial and intraracial crimes. Social Science Research. 31, (3), 392-408.

23) Walsh, Jeffrey A., Krienert, Jessie L. 2007. Child-parent violence: An empirical analysis of offender, victim, and event characteristics in a national survey of reported incid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7), 563-574.

24) Stolzenberg, Lisa, D'Alessio, Stewart J. 2004. Sex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arres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5), 443-454.

D'Alessio, Stewart J., Stolzenberg, Lisa. 2003. Race and the probability of arrest. Social Forces. 81, (4), 1381 -

25) Eitle, David. 2005. The influence of mandatory arrest policies, polic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variables on the probability of arrest in domestic violence cases. Crime and Delinquency. 51, (4), 573-597.

Pattavina, April, Buzawa, Eve, Hirschel, David, Faggiani, Donald. 2007. Policy, place and perpetrators: Using NIBRS to explain arrest practi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Justice Research and Policy. 9, (2).

26) Addington, Lynn A. 2006. Using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murder data to evaluate clearance predictors. Homicide Studies. 10, (2), 140-152.

소요 시간에 대한 연구²⁷⁾ 등도 있다.

⑥ 사회적 관심주제 혹은 연구자의 관심 주제 검증

이 외에도 베이비시터에 의한 아동대상 범죄²⁸⁾, 아동포르노관련 범죄²⁹⁾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로 문제가 된다던지 연구자가 관심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들 또한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동물학대범죄를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있다³⁰⁾.

(2) 사법통계국(BJS)를 통한 공식 범죄통계의 활용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관심사나 주제에 맞는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이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미국 공식범죄통계를 활용에 있어서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³¹⁾의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법통계국(BJS)는 미국 법무부 산하의 조직으로 1979년에 설립되었는데, 범죄 및 범죄자, 범죄 피해자, 및 정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형사사법시스템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출판,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미 범죄피해자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의 실시 및 자료의 분석과 출판이다. 전미 범죄피해자 조사뿐만 아니라, BJS의 가장 큰 특징 및 존재 의의 중에 하나는, BJS가 스스로 집계 및 출판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 및 출판하는 자료도 모두 집약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자료의 활용 면에서도 매우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림 4는 BJS가 직접 수집/발간하거나 혹은 다른 형사사법에서 수집 및 발간하였으나, BJS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데이터들의 종류를 형사사법절차의 절차와 함께 표현한 것으로, 미국전체에서 집계되는 범죄 및 범죄의 처리에 관한 자료들을 형사사법절차별로 나타냄과 동시에 자료 전체의 위치를 한 눈에 보여준다. 또한 자료의 종류를 범죄자 및 가해자 등 사람에 대한 자료와 형사사법절차 및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정보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27) Addington, Lynn A. 2007. Hot vs. cold cases: Examining time to clearance for homicides using NIBRS data. JRP: Justice Research and Policy. 9, (2), 8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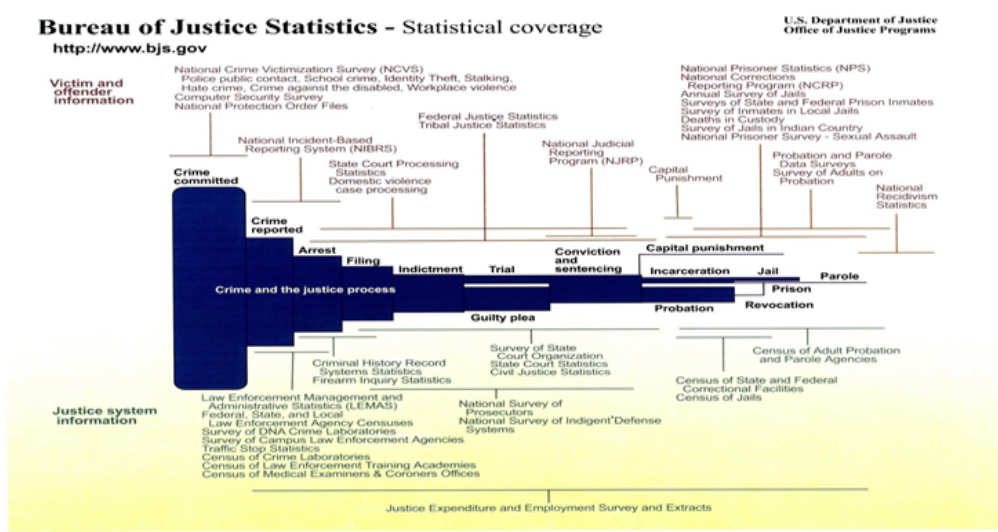
28)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1. Crimes against Children by Babysitte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910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9)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4. Child Pornography: Patterns from NIB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20491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30) Addington, Lynn A., Randour, Mary Lou. 2012. Animal Cruelty Crime Statistics: Findings from a Survey of Stat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s. Washington, DC: Animal Welfare Institute.

31) <http://bjs.ojp.usdoj.gov/index.cfm>

[그림 4] 사법통계국(BJS)의 통계자료



또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 혹은 학자들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 및 발표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며 지원한다. 그리고 BJS에서는 형사사법관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BJS visiting fellow program을 통해 학자들을 초빙하여 BJS에서 수집 및 발표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JRSA (Justice Research and Statistic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통계와 연구 관련 학술대회, 그리고, ICPSR 여름 통계학 특강 프로그램의 일부 BJS와 ICPSR이 공동으로하여 매년 개최되는 Quantitative Analysis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워크숍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특히, 이 Quantitative Analysis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워크숍에서는, BJS에서 발행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쓰는 것을 조건으로 젊은 학자 및 대학원생들에게 워크숍이 진행되는 4주간의 생활비는 물론, ICPSR의 여름 통계학 특강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영국의 범죄통계 수집, 관리 및 활용

1) Crime in England and Wales³²⁾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는 1857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32)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homeoffice.gov.uk/>.

1993년부터는 법률로 경찰이 범죄통계자료를 내무성(Home Office)에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식범죄통계의 집계절차는, 각 지방경찰청의 범죄통계가 내무성으로 보고되고 내무성에서 집계된 것이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인 경찰 범죄통계가 되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실무규칙은 전국범죄입건기준(National Crime Recording Standard, NCRS)과 내무성 범죄통계자료입력규칙(Home Office Counting Rules, HOCR)에 의하며, 집계되는 범죄의 종류는 대인폭력범죄(Violence against the person), 성범죄(Sexual offences), 강도(Robbery), 주거침입절도죄(Burglary), 차량 대상 범죄(Offences against vehicles), 기타 절도범죄(other theft offences), 사기 및 위조범죄(Fraud & forgery), 손괴(Criminal Damage), 마약범죄(Drug Offences), 그리고 기타범죄(Other offences)의 10가지이다.

범죄통계를 입력 및 기록하는 원칙은 전국범죄입건기준(National Crime Recording Standard, NCRS)과 내무성 범죄통계자료입력규칙(Home Office Counting Rules, HOCR)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통해 영국은 전체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은 처음에 영국 경찰장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에서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안의 배경이 된 것이 경찰감사청(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HMIC)이 8개의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 입력 과정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 결과, 경찰관서별로 55%에서 82%의 사건이 보고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경찰의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³³⁾.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은 범죄입건기준에 있어서 각 경찰청간의 일관성 확보 및 범죄입건에 있어서 피해자 지향적 방식의 지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 범죄기준의 일반원칙은 아래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 등에 대해서 입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이라면, 입건대상 범죄로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범죄유형에 해당하는지, 범죄건수는 몇 건으로 산정하여 경찰범죄통계에 기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내무성 범죄통계자료입력규칙(Home Office Counting Rules, HOCR)이다. 내무성 범죄통계자료입력규칙(Home Office Counting Rules, HOCR)³⁴⁾은 2002년 4월에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에 맞추어 개정되었는데,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의 피해자 지향성과 범죄입건기준의 일관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였다. 범죄통계입력규칙(HOCR)은 입건시점을 기준으로, 입건 시점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범죄분류에 따른 통계 입력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한 최종 책

33) NCRS의 도입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NCRS가 범죄통계에 미친 영향 및 NCRS로 인한 범죄통계의 변화는 '전국범죄입건기준: 범죄통계에 미친 영향 분석(National Crime Recording Standard(NCRS): an analysis of the impact on recorded crime)'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10218135832/http://rds.homeoffice.gov.uk/rds/pdfs2/rdsolr3103.pdf>

34) 내무성 범죄입건규칙에 대한 내용은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김한균(2012, 형사정책연구)에서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임은 범죄통계관리관(FCR)에게 있다. 그리고 피해자 일명당 범죄일건 일반원칙(general rule of one crime per victim)은 범죄자의 의도가 명확하거나 및 인식가능한 개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의도된 인식가능한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건수를 범죄자의 수에 따라 산정한다.

[표 1]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의 목적 및 일반원칙³⁵⁾

<p>1.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의 목적</p> <p>1.1. 범죄입건기록에 있어서 지방경찰청간 일관성의 향상 1.2. 범죄입건기록에 대한 피해자 지향적 방식의 증진</p> <p>2.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의 일반 원칙</p> <p>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른다.</p> <p>2.1. 피해자, 증인, 제삼자에 의한 모든 사건의 신고는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사건 수리 되어야 한다.</p> <p>2.2. 최초 수리이후 당해 사건은 통계대상범죄인 경우 범죄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입건되어야 한다. (a) 신고사안이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된 내용에 상응하는 정황이며, (b) 범죄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개연성 있는 경우 입건할 범죄로 판단한다.</p> <p>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의 경우 입건이전 범죄의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p> <p>2.3. 입건된 범죄는 당해범죄발생을 부인할 유효한 추가정보가 없는 한 입건기록이 유지된다.</p> <p>2.4. 본 기준은 범죄입건기록에 있어서 피해자 지향적 접근방식을 중요시한다.</p>
--

다른 공식범죄통계들이 대부분 경찰에 보고된 범죄의 정보 및 처리과정 등을 다루는 것과 달리, 영국의 범죄통계는 ‘최초에 경찰에 의해 범죄로 기록된 위반행위’와 ‘범죄라고 확정된 위반행위,’ 그리고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난 위반행위’가 그것이다. 위의 10개의 범죄통계 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에 경찰에 의해서 범죄라고 기록된 위반행위의 건수를 먼저 표시하고, 이들 중에서 뒤에 범죄라고 확정이 된 위반행위와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위반행위의 건수를 나누어서 각각 표시한다. 즉, 최초에 경찰에 범죄라고 신고가 되었던 사건들 중에서 나중에 몇 건이 실제로 범죄사건으로 기록되고 몇 건이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났는지를 함께 집계하는 방식이다.

2)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웹사이트³⁶⁾에서는 범죄통계관련 보고서

35) 전국범죄입건기준의 원칙 및 일반원칙에 대한 표의 형식 및 내용은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김한균(2012, 형사정책연구)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36) <http://www.ons.gov.uk/ons/taxonomy/index.html?nscl=Crime+and+Justice>

는 물론 범죄통계 자료, 그리고 사용자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범죄통계의 원자료는 엑셀 spreadsheet의 형태 또는 .csv포맷으로 공개되는데, 데이터들은 각각의 위반행위 코드별, 분기별로 나뉘질 수 있다. 다만, 이 범죄통계 원자료 또한 UCR과 같은 형식의 요약데이터로, 개별 사건 각각의 정보에 기반한 분석이 가능한 차원의 데이터는 아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 및 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통계 사용자 가이드(User Guide to Crime Statistics) 또한 존재하는데, 사용자 가이드에서는 데이터의 한계까지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범죄통계 사용자 가이드는 범죄통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참고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범죄통계의 생산 및 발간의 주요 이슈 및 범죄의 분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범죄통계를 올바르게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 범죄통계는 historical crime data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범죄추세를 제공하고, 각각의 위반행위를 경찰관할 구역별로도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통계를 논할 때, 발생범죄의 건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별 인구차이와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범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여 인구 분포비와 추세인구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범죄율을 비교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그림 5] 영국경찰의 범죄지도 제공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POLICE.uk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St Marychurch Neighbourhood Policing Team:** Includes contact details (Email: torquay@devonandcornwall.pnn.police.uk, Telephone: 101) and photos of team members: PCSO Daniel L., PC Lee Methen, PCSO Katelyn, and PCSO Georgan.
- Crime and outcomes in this area:** A map shows 53 incidents of crime and 36 outcomes reported in June 2012 within a half-mile radius of St Marychurch.
- Get involved - your next meeting:** Announces a Police Surgeries event on 7th September 2012 at 2:00p.m. at The Coffee House, The Precinct, St Marychurch.
- Messages:** A list of recent tweets and YouTube videos related to police activities in Devon & Cornwall.
-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in this force:** A section provided by HMIC, featuring a bar chart titled "Anti-social behaviour" showing incidents per 1,000 population for the years 2009-09, 2009-10, and 2010-11. The chart shows a downward trend from approximately 55 in 2009-09 to 45 in 2010-11.

이와 함께 영국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범죄지도를 제공하는데, 해당 사이트³⁷⁾에 접속하여

지명이나 거리명,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서 및 경찰관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지도와 함께 범죄발생 현황, 그리고 주요 범죄별 간략한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조언과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범죄통계와 범죄지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상의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와 관련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공식 범죄통계와 피해자 조사의 연계적 활용에 대한 것이다.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에 집계된 범죄 및 위반행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 범죄, 즉 암수범죄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인에게 범죄피해 여부를 묻는 피해자조사이다. 1981년부터 시행되었고 British Crime Survey로 잘 알려져 있던 영국의 범죄피해조사는 2012년 4월 1일부터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초기의 England와 Wales, Scotland를 모두 포괄하여 실시되던 범죄피해조사(British Crime Survey)는 1980년대 후반부터 Scotland를 제외하고 실시되었으나, 명칭은 계속 British Crime Survey로 쓰여 왔다. Scotland에서 실시되는 단독적인 범죄피해조사(Scottish Crime and Justice Survey)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조사의 명칭을 British Crime Survey에서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내무성(Home Office)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조사자료를 경찰이 집계한 공식범죄통계와 함께 활용하여 영국의 범죄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Crime in England and Wales'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다.

3)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 관리

(1) 범죄통계 발행 기관의 변경과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

영국의 공식범죄통계는 Crime in England and Wales라는 이름으로 내무성(Home Office)이 집계하여 발간해 왔는데, 2012년 4월 1일부터 범죄통계의 발간을 내무성이 아닌 통계청(National Statistics)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10년 영국 통계청이 발간한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Overcoming Barriers to Trust in Crime Statistics: England and Wales)'이라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배경이 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범죄통계의 발행책임은 기존의 내무성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독립기관, 통계청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무성이 통

37) <http://www.police.uk/>

계정보다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과 내무성의 밀접한 관계 및 이로 인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심, 정치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범죄통계 관련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하는데 합의하였고, 2012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범죄통계 발행 업무를 통계청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범죄통계의 발행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통계의 독립성과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영국의 시스템은 중앙의 통계청이 존재하기는 하나, 통계의 생산이 통계청보다는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분권화되고 위임된 성격을 지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책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관련 통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통계가 생산 및 집계되는 일련의 과정 및 여러 가지 정책적 혹은 실질적 필요에 따라 통계 데이터를 재생산 및 가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우에는 언론의 회의적인 시각이나 일반 시민의 정치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통계의 생산 및 관리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은 통계의 정치적 독립성 및 일반시민의 통계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통계만을 담당하는 통계청의 전문성과 관련 기관 및 부처와 통계청과의 독립성은 통계청으로 통계업무를 이관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Holt, 2008³⁸); UK Statistical Authority의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 보고서에서 재인용).

이처럼 영국 범죄통계의 발행기관을 변경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2010년의 영국 내무성이 발간한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Overcoming Barriers to Trust in Crime Statistics)’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영국이 범죄통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불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는지를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 보고서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들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1)범죄통계의 집계 및 발간에 대한 감독기능의 마련으로 통계의 독립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 (2)국가적 통계(England and Wales)의 발간 형식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및 범죄자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것, (3) 경찰 및 형사사법 기관 내부와 외부 다른 기관/단체의 범죄통계의 사용 및 인용 방식을 개선할 것, (4)관련 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범죄통계 및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및 그 처리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수준 높은 자료를 생산, 분석, 및 발표하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권고사항인 관련기관끼리의 협조를

38) Official Statistics, Public Policy and Public Trust, Tim Holt,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2008.

통한 지역사회단위의 수준 높은 통계의 생산은, 해당 보고서가 밝힌 일반 대중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지역사회 수준의 통계와 국가적 수준의 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통계 신뢰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국가차원의 범죄추세 및 범죄처리 과정에 대해서보다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추세 및 범죄처리 과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통계의 불신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표된 통계를 사용 또는 인용하는 방식에서 불신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범죄통계는 매달 43개의 경찰 지방청(police forces)에서 내무성에 범죄통계를 보고하고, 내무성이 이를 다시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무성이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지방청이 집계한 범죄통계를 내무성을 거쳐서 통계청이 관리/분석/발표하는 영국 범죄통계의 현실은, 통계를 집계한 통계 수집의 일차적 목적을 지는 기관은 경찰인데 반해, 최종적으로 범죄통계를 가공 및 발간하는 기관은 통계청이 되는 구조로, 이처럼 범죄통계의 직접적인 수집 및 집계 기관과 집계된 통계를 가공 및 발간하는 기관이 다른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및 범죄통계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료 집계기관과 자료의 가공 및 발간 기관의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에 대한 우려 또한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Advisory committee라는 협의기구를 두고 있다. 범죄통계의 발간 형식 및 결과물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최종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되, 내무성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정도는 통계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범죄통계담당관과 통계 감사(audit)³⁹⁾

범죄통계수집 규칙의 준수를 통한 일관성 있는 범죄통계의 수집을 위해서 각 지방경찰관서에서는 내부에 범죄통계관리관(Force Crime Registrars, FCR)을 두도록 하고 있다. 범죄통계관리관(FCR)은 범죄입건에 대한 경찰의 감사 및 범죄입건 규칙에 대한 해석과 관리를 담당하고, 전국범죄입건기준(NCRS)의 규정에 따라 범죄통계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범죄통계관리관은 수사지휘체계에서 독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 직속으로 범죄통계 관리절차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범죄통계관리관의 주요업무는 ①범죄통계 및 탐문정책의 실행·관리, ②범죄입건기록의 일관성과 정확성 실현, ③범죄통계기록지침과

39) 범죄통계담당관과 감사기능에 대한 내용(표의 형식 및 내용 포함)은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김한균(2012, 형사정책연구)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정책의 교육, ④경찰통계관련 회의 주재, ⑤경찰통계관련 중앙부처 협의, ⑥각 지방청간 범죄통계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등 이다. 표 2에서는 범죄통계관리관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전국범죄통계입건기준(NCRS)의 규칙들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서도 피해자 지향적 방식과 통계입력의 일관성 유지라는 두 가지 기준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범죄통계관리관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영국 범죄통계입건기준

<p>3.1. 모든 사안의 수리는 경찰로 하여금 당해 관할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가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고내용이 범죄로 입건될 경우 일차적으로 사안신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범죄 입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된 내용을 녹음기 등 가능한 장치에 육성기록 으로 사안신고서를 남길 수 있다.</p> <p>3.2. 확인된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사안에 대한 신고에 대해 입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개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당해 사안이 범죄행동의 결과인지의 검토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입건에 충분하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다 피해자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p> <p>3.3.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경찰이 실제 범죄사실 발생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수사에 착수할지의 여부는 신고내용상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 신고 시 전화상으로 질문하는 정도부터 신고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대한 본격적 수사까지 광범위하다. 다만 범죄입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피해자 지향적 접근 이 우선된다.</p> <p>3.4. 최초 신고와 접수 시점, 즉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자의 경찰 신고 시점에서 신고내용은 전화상이건 직접 신고하는 경우이건 그 주장내용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있는 자를 직접 만날 수 없거나 이후 상세진술의 설명을 거부할 경우 범죄입건 판단절차(Crime Recording Decision Process, CRDMP)에 따라 최초접수사실에 기해 판단한다.</p> <p>3.5. 신고피해자가 주취상태 기타 심신미약상태인 경우 CRDMP상 개연성판단이 고려될 수도 있다. 당해 사안은 최소한 기록 후 당해 피해자가 정상적 상태로 회복될 경우 추후 확인한다. 다만 신고 시 판단 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입건한다.</p> <p>3.6. 모든 사안에서 신고담당경찰관이 본 기준 2.2.에 따라 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 시 범죄 입건해야 한다. 당해 사안의 범죄입건은 신고접수 기록 후 72시간이내에 행해야 한다.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기록될 수 있는 한에서 최장 7일까지의 시한이 허용된다. 유일한 예외는 위장잠입수사 (undercover operation)와 관련하여 범죄통계관리관(FCR)이 수사의 특성상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FCR은 수사결과가 확보되는 시점으로부터 기준상의 시한 내 범죄입건한다. 또한 FCR이 예외를 인정한 경우, 감독권한 있는 경찰관과 함께, 모든 해당범죄가 입건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p> <p>3.7. 명백한 범죄행동이 경찰에 의해 인지된 경우,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범죄발생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경찰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범죄는 입건되어야 한다. 수사 및 소추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CRDMP에 따른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경찰이 국가적 범익에 관한 범죄를 인지하게 된 경우 피의자를 확인할 증거 내지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신원증거가 확보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입건해야 한다.</p> <p>3.8. 피해자의 상세 신상정보의 기록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1998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제29조(범죄의 방지 또는 범죄탐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부칙 제2</p>
--

조4항(관련자의 중요이익을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의할 경우 가능하다.

3.9. 피해자 있는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확인 가능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확인특정 될 때까지 범죄관련사안(crime related incident)으로서 기록되어야 한다.

3.9.A. 피해자있는 범죄발생의 경우 범죄입건을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 자가 범죄정황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신상정보를 제시하거나 경찰의 조치를 요구할 필요는 없고, 범죄 관련정황의 확인만 필요하다.

3.10. 예를 들어 버스승차대, 공중전화박스 손괴, 혈흔과 같은 범죄의 가능성 있는 정황으로서 그 자체 범죄 증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경찰이 인지한 경우 범죄입건대상은 아니며, 추가확인이 필요한 유보사안으로 본다.

3.11. 본 기준 3.9상의 '피해자 없이 범죄 없다(no victim no crime)' 원칙은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중한 범죄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도 범죄입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기준 3.9에 반하여 입건하는 경우 범죄기록에 적시하고, FCR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12. 소요사태의 경우 경찰이 현장출동한 후 소요가 지속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범죄입건하지 아니한다.

3.13. 소요상황의 경우 경찰관 이외에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에 따라 당해 범죄자가 불법행동을 중지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안은 범죄입건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3.14. 본 기준은 CCTV로 확인된 범죄사실의 입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TV로 확인된 사안은 제삼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본 기준 3.9와 3.10에 준해 처리한다. 예를 들어 CCTV상으로 소요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소요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현장에 부재한 경우라면 범죄입건대상이 아니라 범죄관련사안으로 분류된다.

3.15. 명백한 범죄행동으로 신고 되었으나 일단 범죄 입건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서 경찰은 피해자,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자, 증인 등으로부터 범죄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당한 탐문을 실행해야 한다. 범죄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안신고서(incident report)에 탐문 이 실시된 사실과 범죄 입건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기록한다.

각 지방경찰청의 NCRS의 준수여부와 범죄통계체계의 관리는 경찰감사청(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HMIC)과 감사원(Audit Commission)의 감사대상이 된다. 각 지방경찰청의 범죄통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지방경찰청에게 있고, 범죄통계 담당관(FCR)은 지방경찰청 장의 범죄통계관리 직무수행을 보좌한다. 전국적 내지 각 지방 단위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행해진다.

- ① 일관성 (범죄통계전담 인력확보)
- ② 일선 수사관의 일차 범죄분류
- ③ 일차 범죄분류에 대한 전문담당자의 최종 승인

- ④ 수사 관련 지휘체계의 통계관리에 대한 영향력 배제
- ⑤ 신고 된 사안으로서 이후 범죄 입건되지 않은 경우의 합당한 사유와 기준준수
- ⑥ 기록 자료의 정확성, 완결성, 적합한 조사수행여부, 정확한 처분여부
- ⑦ 각 지방경찰청 관할 내 합의된 통계감독체계 개선

4. 범죄통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언

1) 공식 범죄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통계의 발간 주체

범죄통계의 발간 주체와 통계의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영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통계의 집계 기관과 통계의 발행기관의 분리논의에 대해서는 UN에서 2003년에 발간된 형사사법 통계 시스템의 발전 매뉴얼(UN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⁴⁰))에서 소개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소개하였고, 영국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Box E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rime statistics? page 52- 참조). 범죄통계에 대한 발행주체의 세 가지 모델은 국가 통계청이 관리하는 것, 통계를 생산하는 형사사법기관 내부에서 담당하는 것, 그리고 제 3의 독립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 통계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통계 관련 전문 인력 및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실제 통계 사용자들로부터는 멀어진다는 우려와 통계청의 다른 업무와 우위성 선점을 위한 경쟁이 필요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요구 및 필요의 반영이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형사사법기관 내부에서 통계를 담당할 경우, 기관 내부의 필요 및 요구에 따른 통계의 활용 및 전반적인 통계활용의 증대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뢰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과 기관으로부터의 개입의 가능성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통계청도 형사사법기관도 아닌 제 3의 독립기관에 통계발행업무를 이관할 경우에는 통계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는 매우 우수하다 할 것이나 통계의 생산 주체로부터 멀어진다는 점과 활발한 통계의 활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현재의 우리의 공식 범죄통계는 대부분이 통계를 생산한 형사사법기관이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발간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찰에서 발행되는 범죄통계를 비

40)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89e.pdf

못해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최근 영국이 범죄통계의 발간 주체를 내무성에서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논쟁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통계의 발행 주체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범죄통계를 형사사법기관 내부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그 통계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신뢰성 및 정치적 독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될 것이다. 범죄통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찰에서 담당해 오던 범죄통계의 발간 업무를 갑자기 통계청 및 제 3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준비기간을 비롯해서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통계청 및 제 3기관으로의 이관이 통계의 신뢰성 및 정치적 독립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통계를 비롯한 형사사법통계의 원자료의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통계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경찰청 내부에서 수집, 집계, 분석 및 발간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던 기존의 방식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 등을 활용한다면 범죄통계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범죄통계의 공동 분석 및 발간 작업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미국의 BJS 경우처럼, 한 기관이 범죄 및 범죄(자)의 처리와 관련한 형사사법기관의 전반에 걸친 통계를 함께 집약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통계관련 연구 성과물 또한 발행하는 시스템의 도입 및 장점의 활용 부분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이 경우,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는 자료인 공식 범죄통계자료와 피해자조사의 비교 검토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BJS의 기능을 가진 사법통계 담당 기구를 범죄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일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경우, 범죄피해조사와 공식범죄통계와의 비교 연구는 물론,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독립성의 확보, 연구원이 인력 및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독립기관으로의 통계이관이 가져올 수 있는 통계생산주체로부터 멀어진다는 단점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면 될 것이다.

2) 범죄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집된 통계에 대한 사후 감사 및 검토를 통해 오류 및 실수를 발견/수정하여 통계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통계 입력 및 집계 과정에서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통계의 입력 및 집계에 대한 원칙 마련이 중요하다. 영국의 범죄통계의 입력기준 지침-전국범죄입건기준(NCRS)과 내무성 범죄통계

자료입력규칙(HOCR)-과 미국의 NIBRS입력 매뉴얼 등은 범죄통계의 입력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의 입력과 함께 입력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입력되고 집계된 통계에 대한 사후 검토 및 감사 기능을 마련하고 이에 내부 전담 조직 및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FBI가 형사사법정보 서비스과(CJIS)내에서 범죄통계의 발간 및 품질관리를 위한 감사(UCR Quality Assurance Review, QAR)를 실시하여 범죄분류와 검거율 체포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및 교정지적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과, 영국의 각 경찰관서에 존재하는 범죄통계담당관 제도는 통계의 품질관리 및 감사기능을 위한 내부조직의 활용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경찰 내부 조직이 아닌 외부전문가인 경찰 감사청(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HMIC)과 감사원(Audit Commission)이 경찰통계에 대한 감사책임을 진다. 특히, 경찰감사청과 감사원이 범죄통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 범죄통계에 관한 입력기준도 경찰청 훈령(제 554호, 경찰 범죄통계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대검찰청 예규 제 215호의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 그리고 경찰범죄통계실무지침 등을 통해 범죄통계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계원표의 작성규칙 및 입력기준, 그리고 통계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주요 오류 입력항목에 대한 내부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방청 범죄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2012년 4월, 경찰청 수사기획과 주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통계의 입력규칙은 및 작성기준은 범죄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입력 및 작성 기준을 경찰관에게 배포하여 통계입력과정에서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꾀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계의 수집 및 집계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입력 및 작성기준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통계입력 기준 및 산출 과정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나 배경설명 등을 통계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탁종연 외, 2008 p. 78).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청을 활용한 범죄통계의 사후감사 및 검토는 우리의 범죄통계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3) 집계자료의 수준 및 자료 공개여부

미국의 범죄관련 연구가 한 단계 진일보 하는데 NIBRS가 기여한 바는 이미 앞에서 NIBRS를 이용한 연구들의 다양한 주제들에서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UCR과 NIBRS의 비교 설명에서도 지적하였듯이, NIBRS가 수집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다양한 수준에 대한 정보는 기존에 요약 보고형식으로 출판되던 범죄통계로는 불가능했던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NIBRS의 도입으로 범죄통계의 분석단위가 종래

의 사건 및 검거 건수와 해결율에 대한 정보를 집합적으로 나타내던 것에서 벗어나 분석 단위를 개인은 물론, 집단까지도 가능하게 하며, 지역수준별 분석까지 가능케 하였다(박정선, 2008). 또한, 분석주체도 가해자, 피해자는 물론 피해품과 위반행위유형등 다양하게 나누었으며, 동일 사건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NIBRS의 도입 이후로 범죄통계를 활용한 연구의 주제 및 결과물도 매우 광범위해지고 풍요로워졌다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통계가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와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원자료의 공개는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 통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통계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집되는 범죄통계의 분석 단위 및 분석 수준, 그리고 분석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변경하는 것은 범죄통계 원표의 변경과 입력 프로그램의 변경 등을 요하는 일이므로,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이처럼 통계원표와 입력 프로그램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범죄통계에 대한 자료수집 방식을 변경하고 수집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가 모든 범죄에 대해 거의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처럼 특정 주요범죄⁴¹⁾에 대해서만 자세히 정보를 수집하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통계입력항목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청 및 경찰관서가 범죄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같은 통계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우리의 경우, 수집통계의 일관성 확보가 다른 연방국가 혹은 지방자치경찰국가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점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일괄적으로 집계되어 누락된 정보가 없다는 통계의 완전성이라는 우리의 장점은 통계 수집항목의 개선과 원자료의 개방으로 더 극대화할 수 있다.

4) 범죄통계의 올바른 사용 및 인용을 위한 노력

가이드북 및 매뉴얼은 범죄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은 물론이고, 자료 집계 및 법령의 적용 등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용자들이 이를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추세 분석 등 자료의 변경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직접 자료의 수집 방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41) 특정 주요범죄에 대해서만 세분화된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함께, 범죄 및 위반행위의 분류를 종전처럼 형법과 특별법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위반행위유형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홍영오와 김한균(2012)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범죄통계의 올바른 이해 및 사용을 위한 것이다. 또한, FBI의 경우에는 UCR 범죄통계의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⁴²⁾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R 통계는 경찰관서가 담당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정보와 경찰에 신고·인지된 범죄, 범죄 해결율, 그리고 체포관련 기록들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개별 정보들을 이용하여 경찰관서 및 지방청의 서열을 매기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범죄 및 사건 해결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인구밀도나 도시화 정도, 소년 인구분포 및 인구분포의 특징, 지역사회의 거주 안정성, 소득 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 등)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범죄통계상의 변수들만을 기준으로 경찰청 및 지방청의 서열을 매기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BI에서는 범죄통계를 발표하면서 범죄통계의 잘못된 인용이 통계의 신뢰도 및 일반시민의 범죄통계에 대한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통계자료로 나타난 주요 결과물이나 특징을 1-2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요약물은 연구자는 물론 언론 보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계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 및 오인용가능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42) <http://www.fbi.gov/about-us/cjis/ucr/ucr-statistics-their-proper-use> 참조.

[참고문헌]

- 김한균. 2012. 최근 영국 범죄통계 개선정책의 피해자지향성.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2 봄,
- 곽대경 외. 2008.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청목 출판사.
- 박정선. 2008.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종연 외. 2008.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통계개발원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 홍영오, 김한균. 2012.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활용방안.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 Addington, Lynn A. 2006. Using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murder data to evaluate clearance predictors. *Homicide Studies*, 10, (2), 140-152.
- Addington, Lynn A. 2007. Hot vs. cold cases: Examining time to clearance for homicides using NIBRS data. *JRP: Justice Research and Policy*, 9, (2), 87-112.
- Addington, Lynn A., Randour, Mary Lou. 2012. *Animal Cruelty Crime Statistics: Findings from a Survey of Stat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s*. Washington, DC: Animal Welfare Institute.
- Akiyama, Yoshio, Nolan, James. 1999. Methods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NIBRS Data.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225-238.
- D'Alessio, Stewart J., Stolzenberg, Lisa, Eitle, David. 2002. The effect of racial threat on interracial and intraracial crimes. *Social Science Research*, 31, (3), 392-408.

- D'Alessio, Stewart J., Stolzenberg, Lisa. 2003. Race and the probability of arrest. *Social Forces*. 81, (4), 1381 –
- Dunn, Christopher S., Zelenock, Thomas J. 1999. NIBRS data available for secondary analysi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239–248.
- Eitle, David. 2005. The influence of mandatory arrest policies, polic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variables on the probability of arrest in domestic violence cases. *Crime and Delinquency*. 51, (4), 573–597.
- Faggiani, Donald, McLaughlin, Colleen. 1999. Using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Data for strategic crime analysi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181–191.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96. *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 How to Prepare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0. Kidnapping of Juveniles: Patterns From NIB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116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1. Child Abuse Reported to the Police.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723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1. *Crimes against Children by*

Babysitte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18910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04. Child Pornography: Patterns from NIBRS. Juvenile Justice Bulletin. NCJ 20491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Government Statistical Authority. 2011. National Statistician's Review of Crime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Greenfeld, Lawrence A. 1998. Alcohol and Crime: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on the Prevalence of Alcohol Involvement in Crime. Prepared for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s National Symposium on Alcohol Abuse and Crime. NCJ 16863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olt, Marion Ronald. 1989. A Comparison of Incident-Based Crime Reporting and Summary Crime Reporting Systems. D.P.A.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Jarvis, John Patrick. 1992. The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and Its Applications to Homicide Research. Questions and Answers in Lethal and Non-Lethal Violence: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Workshop of the Homicide Research Working Group. Ann Arbor, MI, June 14-16,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Koons-Witt, Barbara A., Schram, Pamela J. 2003.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violent offending by fema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4), 361–371.

Messner, Steven F., McHugh, Suzanne, Felson, Richard B. 2004.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ssaults motivated by bias. *Criminology*. 42, (3), 585–618.

Pattavina, April, Buzawa, Eve, Hirschel, David, Faggiani, Donald. 2007. Policy, place and perpetrators: Using NIBRS to explain arrest practi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Justice Research and Policy*. 9, (2).

Poe, E., Snyder, H.N. 1995. Reliability of the FBI's NIBRS Data: Five Case Studies. *OJJDP Bulletin*, NCJ 17861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Reaves, Brian A. 1993. Using NIBRS Data to Analyze Violent Crimes. NCJ 14478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nyder, Howard N. 1995. NIBRS and the Study of Juvenile Crime and Victimization. Trends, Risks, and Interventions in Lethal Violenc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Spring Symposium of the Homicide Research Working Group. Atlanta, Georgi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Snyder, Howard N. 2000. Sexual Assault of Young Children as Reported to Law Enforcement: Victim, Incident,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NCJ 18299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tolzenberg, Lisa, D'Alessio, Stewart J. 2000. Gun availability and violent crime: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Social Forces*. 78, (4), 1461-1482.

Stolzenberg, Lisa, D'Alessio, Stewart J. 2004. Sex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arres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5), 443-454.

Stolzenberg, Lisa, D'Alessio, Stewart J. 2007. The effect of divorce on domestic crime. *Crime and Delinquency*. 53, (2), 281-302.

Thompson, Martie P., Saltzman, Linda E., Bibel, Daniel. 1999. Applying NIBRS data to the stud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Massachusetts as a case stud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 163-180.

UK Statistical Authority. 2010. *Overcoming Barriers to Trust in Crime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Walsh, Jeffrey A., Krienert, Jessie L. 2007. Child-parent violence: An empirical analysis of offender, victim, and event characteristics in a national survey of reported incid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7), 563-574.

미국 FBI(연방수사국) 홈페이지: www.fbi.gov

정치 및 사회 조사 연구를 위한 대학간의 컨소시엄 홈페이지 : www.icpsr.umich.edu

미국 사법통계국 홈페이지: www.bjs.ojp.usdoj.gov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www.homeoffice.gov.uk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www.statisticsauthority.gov.uk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발행일 | 2012년 9월
발행인 | 김 일 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575-5285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 |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전화 02)2263-593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